

연구보고 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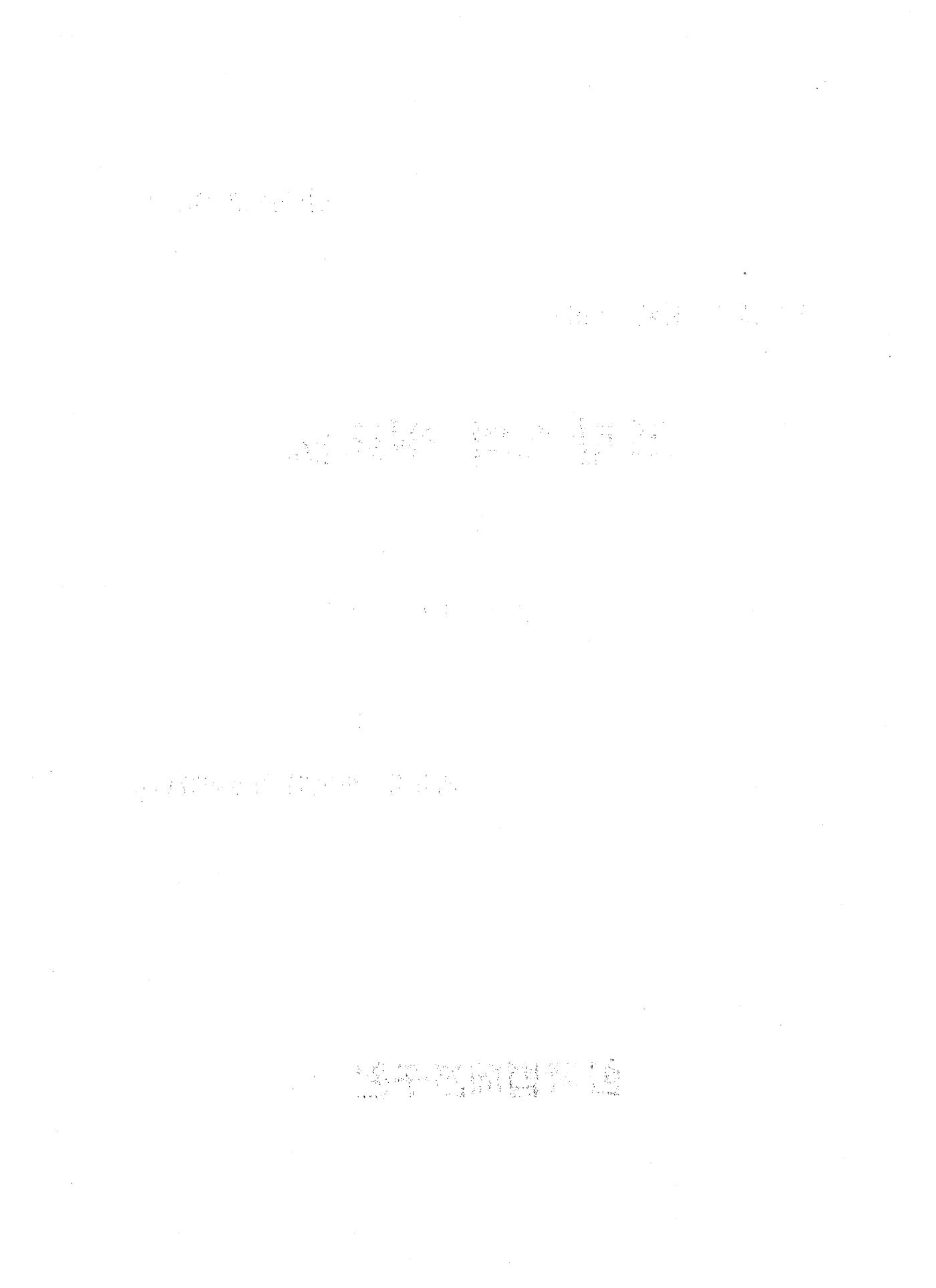
主要國의 倒産法(Ⅲ)

프랑스의 倒産法

1998. 12.

研究者：崔星根(首席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發刊辭

倒產에 처한 企業에 대하여 합병, 기업매수, 영업양도, 자산매각 등 시장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퇴출을 私的 整理에 맡기기보다는 法的 節次에 의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적 정리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중심이 되어 사태를 해결하는 임의적인 채무정리방법이라는 점에서 거래비용은 다소 적게 들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고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법적 절차와는 달리 채권자들에 대한 '公平한 辨濟'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진정한 '새로운 出發'도 용이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무정리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산기업의 퇴출은 원칙적으로 포괄집행방법인 倒產節次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산기업의 퇴출을 법적 절차에 의한다고 할 때 어느 나라의 도산법제도든 가장 먼저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이를 破產節次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更生節次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파산절차는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하여 최소한의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산절차라는 관점에서 파산절차를 표준적 도산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기업의 계속과 고용의 확보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갱생절차를 표준적 도산절차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프랑스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倒產法制度는 우리의 도산법제도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어느 대륙법계 국가들의 도산법제도와는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도산법제도는 雇傭確保와 失業防止를 법정책의 우위에 두는 政治的 背景에 터잡아 극단적인 更生優先主義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운용에 있어서도 도산절차를 주관하는 商事法院이 비전문법관인 상인으로 구성되는가 하면 도산절차가 商事法院長의 대폭적인 재량하에 상당히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어느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프랑스 도산법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배경을 비롯하여 프랑스인들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에 의한 구조조정과 함께 자생력 및 경쟁력을 상실한企業에 대한 원활한退出이 절실하게 필요한 현재의 경제위기상황하에서, 우리의 도산법제도는 그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체계와 내용 및 운용방향의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현행법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한 평가와 선진외국의 다양한 입법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계의 보편적인 동향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다 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도산법제도를 고찰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향후 倒産法制度에 관한 연구 및 倒産法改正作業에 유용한 立法研究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서의 집필에 수고한 연구자와 법령번역 작업에 도움을 준 강덕미석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수료)의 노고를 치하함과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998년 12월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徐承完

目 次

第1部 프랑스의 倒産法制度	9
第1章 프랑스 倒産法制度의 概觀	11
I. 프랑스 倒産法制度의 體系	11
II. 프랑스 倒産法制度의 特徵	12
1. 概 要	12
2. 极 단적인 更生優先主義	13
3. 商人破産主義와 商事法院	13
4. 同類的 關係의 운용 및 法定管理人の 역할	14
5. 債權者의 地位의 열후화	15
6. 和解의 이용	16
7. 經營者の 責任	17
III. 프랑스 倒産法制度의 沿革	18
1. 1985年 改正 이전	18
2. 1985年 改正	20
3. 1994年 改正	22
第2章 倒産防止節次	23
I. 序 說	23
II.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	23
1. 概 要	23
2. 節 次	24
3. 執行停止 및 辨濟禁止	25
4. 商事法院長의 裁量權	25
III. 警告節次	26
1. 概 要	26
2. 節次의 開始	26
3. 節次開始의 基準	27

4. 商事法院長과 經營者의 회합	28
5. 警告節次의 實效性	29
IV. 特別管理人에 의한 整理節次	29
1. 概要	29
2. 節次의 開始	30
3. 特別管理人の 選任	30
4. 警告節次의 동결 및 破産節次의 회피수단으로의 이용	31
5.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 開始의 연장수단으로의 이용	31
6. 사실상의 特別管理人으로서의 管理人	32
 第3章 更生節次	35
I. 序說	35
II. 更生節次의 開始	35
1. 更生節次의 申請 및 管轄	35
2. 支給停止의 概念	35
3. 倒産節次關係人	36
III. 觀察節次	36
1. 概要	36
2. 貸借對照表, 社會貸借對照表 및 更生計劃案의 작성	37
3. 觀察期間중의 企業에 대한 취급	39
IV. 企業의 繼續 또는 讓渡에 관한 更生計劃	43
1. 更生計劃의 認可	43
2. 企業의 繼續	44
3. 企業의 讓渡	46
V. 企業의 資產	48
1. 債權의 調查 및 確定	48
2. 否認權	49
3. 配偶者の 權利	49
4. 動產賣渡人の 權利와 所有權에 기초한 返還請求	50
VI. 雇傭契約에서 발생하는 債權에 대한 辨濟	50
1. 債權의 調査	50

2. 勤勞者의 優先的 權利	51
VII. 簡易更生節次	51
1. 概要	51
2. 開始決定 및 觀察期間	52
3. 更生計劃案의 作成	52
4. 更生計劃의 履行	53
第4章 清算節次	55
I. 概要	55
1. 先更生 後清算의 原則	55
2. 清算人의 選任 및 任務·權限	55
3. 營業活動 기타 貸貸借契約의 繼續 여부	55
4. 滿期末到來債權의 取扱	56
II. 清算節次開始의 決定	56
1. 觀察期間중에 開始되는 경우	56
2. 觀察期間 없이 開始되는 경우	56
III. 換價	57
1. 不動產의 賣却	57
2. 一括讓渡	57
3. 기타 資產의 賣却	58
4. 清算人の 報告義務 및 管轄行政官廳의 先買權	58
5. 集團的 仲裁 또는 和解	58
6. 換價와 관련한 個別的인 追及權의 行使	58
IV. 配當	59
1. 配當의 順位 및 範圍	59
2. 配當의 假支給	59
V. 清算節次의 終決	59
1. 清算節次 終決의 決定	59
2. 清算人の 執行計算書 作成義務	60
3. 清算節次 終決의 決定 이후의 個別的 追及權의 回復	60
4. 清算節次의 繢行	60

第5章 民事上·刑事上의 制裁	63
I. 法人의 機關 또는 社員 및 經營者の 責任	63
1. 法人의 機關 또는 社員의 責任	63
2. 經營者の 不實經營에 대한 責任	63
3. 經營者の 기타 事由에 의한 責任	64
II. 個人的 制裁 기타 能力制限	64
1. 個人的 制裁의 對象者	64
2. 要 件	64
3. 個人的 制裁의 申請	65
4. 禁止對象業務	65
5. 個人的 制裁의 處分期限 및 制裁의 解除·復權	66
III. 破産犯罪 기타 犯罪行爲	67
1. 破産犯罪行爲	67
2. 기타 犯罪行爲	68
第6章 프랑스 倒産法制度의 示唆點	71
I. 倒産節次의 一元化	71
II. 倒産防止節次	71
III. 倒産節次중 和解의 활용	72
IV. 經營者の 責任 추궁	72
V. 簡易更生節次	73
第2部 프랑스 倒産法 原文翻譯	75

第1部

프랑스의 倒産法制度

第1章 프랑스 倒産法制度의 概觀

I. 프랑스 倒産法制度의 체계

프랑스는 극단적이라 할 수 있는 更生優先主義를 취하면서 一元的인 倒産節次를 채용하고 있다. 즉, 프랑스의 企業倒産에 관한 法的 節次는 우선 更生을 목적으로 절차를 개시하고 추후 갭생의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清算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프랑스 도산법제도의 기본적인 절차는 司法的 更生과 司法的 清算이고,¹⁾ 여기에 더하여 倒産防止節次를 두고 있으며, 도산절차와 도산방지절차의 운용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역할이 큰 倒産節次關係人에 관하여는 따로 이 個別法을 두고 있다.²⁾³⁾ 한편 和議節次는 도산절차에 선행하는 도산방지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⁴⁾

먼저 갭생절차와 청산절차는 1985년 1월 25일의 '企業의司法的更生및清算에관한法律(LOI n. 85-98 relative aux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 des entreprises. 이하 '倒産法'이라 한다) 및 동년 12월 27일의 명령

- 1) 司法的 更生은 우리의 會社整理節次와 유사한 것으로 이하 '更生節次'라 한다. 또한 司法的 清算은 우리의 破産節次와 유사한 것으로 이하 '清算節次'라 한다.
- 2) 프랑스의 倒産節次 또는 倒産防止節次에 있어서는 법원 이외의 다양한 관계인이 개입한다. 이러한 倒産節次關係人 중 갭생절차에 있어서의 管理人, 청산절차에 있어서의 清算人 및 기업을 진단하는 鑑定人에 관하는 따로이 개별법을 두고 있다.
- 3) 프랑스에서는 최근까지 개인의 倒産을 事實問題로만 취급하여 법규정조차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들어 개인도산이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전환되었는데, 그 결과 1989년 '個人및家族의過多債務에따른紛爭에관한對策및規定에관한法律(Loi n. 89-1010 du 31 décembre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et au règlement des difficultés liées au surendettement des particuliers et des familles)'의 제정으로 프랑스의 도산법제도에 개인의 도산에 관한 法的 節次가 도입되었다.
- 4)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의 감액과 지급의 유예에 대한 합의라고 하는 非司法的인 節次(les procédés non juridictionnels)에 의하여 도산기업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대하여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연유로 최근까지 청산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和議制度에 대하여 私的 契約의 지위만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전통적인 입장은 최근 들어 후퇴하였는데, 倒産防止節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1984년에 이르러 '企業의倒産防止및解에의한整理節次에관한法律(LOI n. 84-148 à la prévention et au règlement amiable des difficultés des entreprises)'이 제정되면서 和議制度가 도산법제도에 法的 節次(和解에 의한 整理節次 : règlement amiable)로 편입되었다. Michel Jeantin, Droit commercial, Dalloz, 1990, p.241 et suiv..

(DECRET n. 85-1389)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음으로 도산방지절차는 생생절차와 청산절차라고 하는 도산의 정식절차의 전단계 절차로 1984년 3월 1일의 '企業의倒産防止 및 和解에의한整理節次에 관한法律(LOI n. 84-148 à la prévention et au règlement amiabil des difficultés des entreprises. 이하 '倒産防止法'이라 한다) 및 동명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끝으로 倒産節次關係人에 관하여는 따로이 1985년 1월 25일의 '企業의清算節次에 있어서의管理人,清算人및企業診斷鑑定人에 관한法律(LOI n. 85-99 relative aux administrateurs judiciaires, mandataires judiciaire à la liquidation des entreprises et experts en diagnostic d'entreprise. 이하 '倒産節次關係人法'이라 한다) 및 동명령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II. 프랑스 倒産法制度의 특징

1. 概要

프랑스의 도산법제도는 우리의 도산법제도와 마찬가지로 大陸法系에 속하지만, 현행 프랑스 도산법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의 도산법제도와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도산법분야에 있어서 세계의 보편적인 동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프랑스의 도산법 제도는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도산법제도나 EU 도산조약의 전개와는 달리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여 왔다.⁵⁾ 프랑스의 도산법제도는 무엇보다도 雇傭確保와 失業防止를 법정책의 우위에 두는 政治的 背景을 그 근저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⁶⁾ 아울러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가 쉽지 아니한 부분은 도산절차를 주관하는 商事法院이 비전문법관인 商人으로 구성되고, 도산절차가 商事法院長의 대폭적인 재량하에 상당히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프랑스의 사회·역사·프랑스인의 심리에 대한 통찰이 없다면 프랑스 도산법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⁷⁾

5) 도산법제도에 관한 각국의 발전추이를 보면, 종래 거의 절대적으로 '債權者의 滿足'을 우선하였던 경향으로부터 '債務者の 새로운 出發'을 고려하거나 공익차원에서 更生制度를 도입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6) 프랑스 倒産法은 제1조에서 更生節次의 목적을 "企業의 保護, 營業活動과 雇傭關係의 維持 및 債務의 辨濟"라고 정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倒産防止節次에 관하여 個別法을 두고 있다.

2. 극단적인 更生優先主義

프랑스의 도산절차는 우선 모든 사건에 대하여 **更生節次**를 개시하고 도중에 **생생불능**으로 판명된 것을 **清算節次**로 이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유지를 통한 고용확보와 실업방지를 위하여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을 가능한 한 **생생시키도록** 한다는 정책에 기초하여 입법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인 **생생우선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도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도산의 처리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생생·청산절차개시의 전단계**에서 **商事法院長의 주도하에** 도산에 이를 우려가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거나 재건안을 작성시킴으로써 도산의 방지를 꾀하는 **倒産防止節次**를 두고 있다.

한편 모든 도산사건에 **생생절차**를 우선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게 되는 **清算節次**가 지연되는 폐단이 있자, 1994년 도산법개정에서 처음부터 **생생**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생생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산절차**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1994년의 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의 즉시개시**를 인정할 여지를 열어 놓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생생**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이념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3. 商人破産主義와 商事法院

1807년의 나폴레옹법전에 의하여 채용된 **商人破産主義**의 전통은 그 후 파산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기업의 도산에 적용되는 도산법은 **個人의 倒産**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도산에 관하여 관할권을 통상의 법원이 아닌 **商事法院(tribunal de commerce)**이 가진다. 상사법원의 법관은 **商人** 중에서 뽑힌 **비전문법관**이고 무급이다. 즉, 상사법원은 중세의 이탈리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상인자치의 요체로서 상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통상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취급하며, 상인의 자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기업의 계산서류가 상사법원이 관리하는 **商業登記簿**에 등록되는 등 **企業**에 관한 제반 **情報**가 상사법원에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7) 小杉丈夫, “フランスにおける倒産豫防手續の實務”, 國際商事法務, Vol. 26 No. 3, 1998. 3, 253~254面.

또한 프랑스의 도산절차에 있어서는 商事法院長의 권한이 특히 큰 데, 이 점은 특히 倒産防止節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일단 상사법원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면, 상사법원은 이 회사에 대하여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상사법원은 회사를 ‘警告節次(procédure d’alerte)’에 들어가도록 하고, 상사법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대하여 재무상태 개선책의 제출과 함께 재무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사법원은 직권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清算節次를 개시한다. 그러므로 경고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청산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종종 管理人 중에서 特別管理人(mandataire ad hoc)을 임명하고 그에게 회사의 관리·감독을 맡긴다. 특별관리인은 상사법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회사의 재무상태의 개선 또는 청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任意的 整理에 조력한다. 이와 같이 청산절차의 개시 전에 재무상태가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상사법원이 강력한 개입·감독권을 행사하는 것과 특별관리인이 상사법원과 회사간에 개재하여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프랑스 도산절차실무의 특징의 하나이다.⁸⁾

4. 同類的 關係의 운용 및 管理人の 역할

프랑스의 도산절차는 동류적 관계에서 운용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는 도산 사건이 상사법원의 상인인 비전문법관에 의하여 감독되고, 갱생절차와 청산절차가 管理人(administrateur judiciaire)과 清算人(mandataire liquidateur)이라고 하는 법관이 아닌 전문직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관리인이나 청산인이 법률적인 조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辯護士(avocat)에게 위임한다. 또한 프랑스의 갱생·청산절차에 있어서는 관리인이나 청산인에 의한 이해관계자 간의 和解節次가 많이 이용된다. 아울러 상사법원에 의한 관리인 또는 청산인의 선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과정을 통하는 예도 적지 않다고 한다.⁹⁾

또한 도산절차의 실무를 보면, 법원에서 당사자를 원조 또는 대리하는 직무는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담당하지만, 도산절차 특히 도산예방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관여하는 예가 거의 없다고 한다. 도산예방절차에 있어서는 企業更生専門家라

8) 小杉丈夫, 前掲論文, 254面.

9) 小杉丈夫, “日本人からみたフランス倒産法の實務”, 金融法務事情, No. 1451, 1996. 5. 25, 22面.

고 할 수 있는 비법률가인 管理人の 역할이 중요하다. 상사법원장과의 회합에 있어서도 상사법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자는 관리인이고, 변호사는 관리인의 조력자로서 참석할 뿐이다.

관리인은 기업생생사건 또는 도산방지사건을 취급한다. 그리고 관리인을 도와 그의 감독하에 실무를 행하는 정식자격이 없는 補助職이 있다. 이러한 보조직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관리인을 보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의뢰한 보조직이 관리인을 보조하기도 한다. 통상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종의 중개인으로 하여 누구를 관리인으로 할 것인가, 관리인의 보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을 타진한다.

그러나 도산방지절차에서 등장하는 전문직이 관리인만은 아니다. 상사법원의 법관은 경고절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檢查人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검사인이 되는 자는 청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清算人이다. 청산인의 자격은 관리인이 아닌 비법률가인 기업해체전문가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는 도산절차를 취급하는 여러 전문직이 존재하고 그들간에 공존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5. 債權者의 地位의 葵후화

프랑스의 도산절차에 있어서 기업의 운명과 채권자에 대한 지급조건을 확정하는 것은 오직 법원뿐이다. 법원은 스스로 更生計劃을 결정하고 그 조건을 선택하며 기업에 대하여 繼續計劃과 讓渡計劃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법원에 부여된 이러한 권한은 채권자의 희생에 의하여 달성된다. 즉, 생생계획을 채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債權者の 同意를 얻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점은 프랑스의 도산절차가 제외국의 도산절차와 비교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기도 하다.

繼續計劃은 통상 채권자의 희생 즉, 債務의 減額 또는 辨濟期間의 猶豫를 그 전제로 한다. 이 점에 관하여 프랑스 도산법은 채권자의 동의문제를 교묘하게 해결하고 있다. 통상의 생생절차의 경우 계속계획안은 관리인이 작성하는데, 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감액 또는 변제기간의 유예를 승락하도록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債權者代表(représentant des créanciers)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전달되고, 채권자대표는 채권자들과 협의한 후 회답표를 모아서 관리인에게 제출한다. 다음으로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데, 법원은 관리인의 보고에 기초하여 기업의 계속을 결정한 경우 비로소 채권자가 승낙한 채무의 감액 또는 변제기간의 유예에

관한 증서를 부여한다. 관리인의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채무의 감액없이 변제기간의 통일적 유예를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¹⁰⁾ 요컨대 채권자는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고 관리인의 제안에 따르든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의한 변제기간의 유예를 강제당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¹¹⁾

6. 和解의 이용

프랑스의 도산절차에 있어서는 청산절차는 물론 갱생절차의 경우에도 和解가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清算節次의 화해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清算인이 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도산법 제158조제1항). 이러한 화해는 수명법관에 의한 감독과 채무자의 의견청취를 요한다. 그리고 화해계약 체결후 상사법원의 승인을 거치고 불복신청기간을 경과하면, 도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화해의 성립에 관하여 다투 수 없다. 즉, 화해가 對世的 效力を 가진다.

更生節次에 있어서도 관찰기간중에 管理人은 종종 채권자와 화해를 진행한다. 관리인은 관찰기간중에 갱생계획을 작성할 때까지 화해에 의하여 채권자의 수를 줄인다. 즉, 프랑스의 갱생절차에서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갱생에 유용한 채권자만을 위하여 갱생계획을 작성하고, 유용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사전에 화해를 통하여 갱생절차로부터 배제시키고 있다.¹²⁾ 다만, 갱생절차에 있어서의 화해는 청산절차에서와는 달리 대세적 효력이 없고 受命法官에 의한 화해의 許可라고 하는 형태로 처리된다(도산법 제33조제2항).

10) 판례를 보면 이러한 猶豫期間은 5년부터 15년까지로 다양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채권자에게 부과되는 장기간의 변제의 유예는 이자의 수취에 의하여도 상쇄되지 아니하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권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다. 더욱이 프랑스의 도산법은 이자의 지급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クロード・ウイツ, 西澤 宗英譯, “フランス倒産法における債権者の地位”, 法學研究, 第62卷 第2號, 1989. 2, 49~51面.

11) 변제기간유예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從業員의 賃金債券과 일정액 초과하지 아니하는 少額債權뿐이다(도산법 제76조 참조). 한편 채무자가 繼續計劃에서 정하는 유예기간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채권의 15%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집단은 갱생절차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도산법 제80조 참조).

1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나 미국·독일·일본 등에 있어서는 少額債權者에 대한 변제를 제외하거나 갱생계획에서 債權者의 組를 나누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채권자를 망라하는 更生計劃을 작성한다.

7. 經營者の責任

프랑스 도산법은 제180조에서 '법원은 법인의 개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積極財產의 不足이 밝혀진 경우, 이러한 자산부족의 원인이 不實經營에 있는 때에는 법률상·사실상 및 유상·무상의 經營者 전원 또는 일부에게 법인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또는 연대없이 責任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무자의 경영자가 기업이 支給停止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경영을 계속하여 적극자산의 부족을 증대시키고 도산한 경우에는, 경영자가 적극자산의 부족분을 개인적으로 전보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영자는 이 규정과 함께 제182조 및 제188조에 의하여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제재로서 清算節次의 개시를 선고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지급정지로 보여지는 상태에 이르면 자신의 개인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곧 바로 도산절차를 신청한다. 이 점이 프랑스에서 도산사건의 수가 많은 이유중의 하나이다.¹³⁾

또한 法律上 理事(dirigeant de jure) 이외에 事實上 理事(dirigeant de fait)도 債務填補訴訟(acttien en comblement de passif)에 의하여 적극자산 부족액에 대한 전보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상의 이사는 반드시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일 수도 있다. 채무전보소송은 도산절차의 개시결정후 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의하여 제기된다. 아울러 채무전보소송과 유사한 기능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과도한 원조에 대한 責任訴訟(soutien abusif)이 있다. 이 소송은 경영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법인에게 과도한 또는 과실로 인한 원조를 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이는 民法 제1382조의 不法行爲의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채무전보소송과는 별개로 판례법으로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倒産法 제180조의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판례상으로 도산에 의하여 채무자가 손실을 입은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청산인으로 한정하여 채무전보소송과의 중복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¹⁴⁾

13) 小杉丈夫, “日本人からみたフランス倒産法の實務”, 前掲論文, 25面.

14) 上掲論文, 25面.

III. 프랑스 倒産法制度의 沿革

1. 1985年 改正 이전

프랑스의 도산법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1807년의 상법전 이래 적어도 6회(1838년, 1889년, 1955년, 1967년, 1985년 및 1994년)에 걸친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1807년 商法典(code de commerce)에서의 도산 절차는 파산상인을 처벌하고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채권자의 변제만족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150년이 흐르면서 상법상의 파산조항들은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1838년, 1889년 및 1955년).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개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이후 1967년 개정에서는 기업의 갑생을 우선으로 하고 처음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하여 법적 차등을 두는 등 도산절차의 기본원칙을 크게 바꾸었다. 즉, 그 이전의 도산절차에서는 개인과 기업에 대하여 '處罰 또는 更生(punir ou guérir)原則'을 유지하였으나, 1967년 개정은 이를 '處罰과 更生(punir et guérir)原則'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67년 개정에 의하여 다소 성공을 거둔 프랑스는 여기에 더하여 1985년에 다시 여러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프랑스 도산법의 토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¹⁵⁾

특히 1955년 이후의 개정은 매우 근접하여 반복되고 있는데, 1994년의 도산법 대개혁이 있기 전까지 1877년의 '破産法(Konkursordnung)'과 1935년의 '和議法(Vergleichsordnung)'에 의존하여 온 독일의 도산법과 비교하여 대조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독일에서 이와 같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도산법 개혁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에서 빈번하게 도산법을 개정하여 온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가 경제생활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증대시켜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치유책은 무엇보다도 도산법의 개정을 통하여 모색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신앙을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15) Hubert Lafont, "The French Bankruptcy System", CORPORATE BANKRUPTCY AND REORGANISATION PROCEDURES IN OECD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OECD, 1994, pp.15~16.

1985년의 개혁 이전의 법률은 도산법제도로서 완전한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었다. 구법 즉, 1967년 도산법은 3가지 다른 절차에 의하여 특징지워졌는데, 지금 정지에 빠진 모든 상인 및 사법인에 적용되는 '整理節次(règlement judiciaire)' 와 '清算節次(liquidation des biens)' 그리고 중요한 기업 즉, '그 소멸이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기업'으로서 아직 지급정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訴求의 暫定的停止(suspension provisoire des poursuites)'가 그것이다. 이러한 3가지 절차는 기업의 생생을 우선으로 하고 최초로 개인과 기업에 대하여 법적 차등을 두는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 할 정도로 방향을 선회한 결과로서 도입된 도산절차들이기는 하였지만, 대개의 경우 기업의 상황과 절차의 개시의 시점이 부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이용도가 매우 낮았다고 한다.

1967년의 법률에 의한 제절차 중 다른 절차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된 것은清算節次였는데, 전체 도산절차중 90%가 청산절차 즉, 企業의 解體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한다.¹⁶⁾ 반면에 재건가능한 기업을 위하여 마련되었던 整理節次의 이용도가 낮았던 것은 그 기업이 경제적으로 존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⁷⁾ 즉, 프랑스의 정리절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일법의 和議節次(Vergleich)와 유사한 것이었다. 아마도 법원은 우선 정리절차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정리절차가 청산절차로 이행되었다. 실제로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기업의 부채가 이미 커져서 과도하게 된 시점에 행하여졌고, 대부분의 경우 일반채권자만이 整理計劃에 동의하고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정리계획의 인가후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무리를 해서라도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을 변제하려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당해 기업은 이미 정리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리절차는 청산절차로 이행되고 경제적으로는 존속가능한 기업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재정적 파탄에 처해 있는 기업의 재건을 확보한다는 목적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다.

16) クロード・ウイツ, 前掲論文, 42面。

17) 1967년 법률은 제7조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한 整理計劃를 제안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整理節次의 개시를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 1985年改正

1985년의 개혁은 3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¹⁸⁾

제1은 '企業의 倒産防止(preveation des difficultes des entreprises)'와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reglement amiable)'에 관한 것이다. 이들 절차는 1984년 3월 1일 공포된 '企業의倒産防止및和解에의한整理節次에관한法律(LOI n. 84-148 à la prévention et au règlement amiable des difficultés des entreprises)'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특히 기업의 재정적 파탄을 탐지하고 이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법률의 기본취지는 기업의 재정적 파탄을 보다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治療보다豫防이 낫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법률은 경영자의 주의를 그 기업의 재정적 파탄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警戒의 메카니즘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기업이 아직 支給停止의 상태에 빠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적 파탄을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제2는 倒産節次關係人(auxiliaires de justice)에 관한 것이다. 구법에서 倒産管財人(syndic)은 두가지의 권한을 겸유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債權者를代理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清算節次의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리하고 整理節次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채무자를 보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는 관재인이 채권자의 만족을 우선시키고 기업의 경영을 회생시킨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더욱이 관재인은 종종 '기업의 무덤을 파는 자'라는 오도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1985년 1월 25일 공포된 '企業의清算節次에있어서의管理人,清算人및企業診斷鑑定人에관한法律(LOI n. 85-99 relative aux administrateurs judiciaires, mandataires judiciaire à la liquidation des entreprises et experts en diagnostic d'entreprise)'은 관재인이라고 하는 직을 소멸시키고 이를 管理人(administrateur judiciaire)과 清算人(mandataire liquidateur)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새로운 직으로 바꾸었다. 관리인은 경영의 권한을 가지며, 청산인은 채권자를 대리하고 기업의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한다.

제3은 본래 의미의 倒産節次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도산절차는 1985년 1월 25일의 '企業의司法的更生및清產에관한法律(LOI n. 85-98 du 25 janvier 1985

18) クロード・ウィツ, 前掲論文, 43面 이하.

relative au redressement et a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신법은 구법상의 整理節次, 清算節次 및 訴求의 暫定的 停止를 先更生(redressement judiciaire) 後清算(liquidation judiciaire)의 一元的 節次로 치환한 것이다. 새로운 도산절차는 절차의 흐름은 일원적이지만 두가지 방식 즉, 두가지 속도를 가지고 있다. 通常의 節次와 소규모기업에 적용되는 簡易節次가 그것이다.

통상의 절차든 간이절차든 간에 모든 절차는 觀察期間(periode d'observation)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기업의 생생이 가능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확정하는 절차 단계이다. 통상의 절차에서는 管理人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노동관계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이 조사서에 기초하여 更生計劃案(plan de redressement) 또는 清算節次의 개시를 제안한다. 簡易節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受命法官(jugu-commissaire)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노동관계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한다. 간이절차에서는 통상 채무자 자신이 생생계획을 작성하고, 법원이 관리인의 선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 이를 작성한다. 관찰기간중에 기업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계속되고, 관리인은 기업을 감독하거나 경영을 보좌하거나 또는 배타적으로 기업을 관리할 임무를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다. 관찰기관은 당초 통상의 절차에 있어서는 3월로 한정되고 1회에 한하여 생신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6월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8년 4월 21일의 명령 제 88-430호에 의하여 통상의 절차의 경우 3월에서 6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연장의 가능성은 개정되지 아니하여 최장기간은 18개월이다.

다음으로 관찰기간의 종료후 '決定'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管理人的 報告(간이절차의 경우에는 債務者 자신이 제출한 更生計劃案)에 기초하여 기업의 운명을 결정한다. 결과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재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 경우 법원은 更生節次의 개시를 결정한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1967년의 법률에 의한 청산절차와 거의 동일한다. 다른 하나는 재건이 불가능한 것이 명확해진 경우로 이 경우 법관은 당해 기업에 대하여 清算節次의 개시를 결정한다. 이러한 생생절차는 생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企業의 繼續計劃(plan de continuation de l'entreprise)', '企業의 全部讓渡計劃(plan de cession totale de l'entreprise)' 및 '企業의 一部讓渡計劃(plan de cession partielle de l'entreprise)'이 그것이다.

3. 1994年 改正

1985년 법률하에서 오히려 倒産件數가 증가하고 절차의 결과도 대부분 청산절차의 개시로 귀결되는 등 두드러진 개정의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즉, 도산건수를 보면, 1985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85년에 26,425건이던 것이 1991년에 이르러서는 52,965건으로 2배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청산절차에 앞선 간생절차의 개시로 불명예감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고 경영권이 박탈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 즉, 파산이 갖는 警告的 機能이 발휘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¹⁹⁾ 그리하여 1985년의 법률과 명령은 1994년 6월 10일 법률(loi no 85-98)과 1994년 10월 21일 명령(Décret no 194-910)에 의하여 재개정되었다.

1994년 개정은 ①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清算節次의 卽時開始를 인정하고, ② 債權者에 의한 監督制度를 두며, ③ 經營者에 대한 制裁를 강화하는 등 총체적으로 債權者의 地位의 改善을 목표로 한 것이었는데, 종래의 문제점을 발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 山本 和彦, “フランスの倒産節次”, 判例時報, 第1441號, 1993.2.21, 25面.

第2章 倒産防止節次

I. 序說

프랑스의 기업도산에 관한 법제도에 있어서는 도산절차의 개시전단계에서 상사법 원장의 주도하에 도산에 이를 우려가 있는 기업의 財務常態를 改善시키거나 再建案을 작성시킴으로써 도산의 방지를 피하는 복수의 非公開的인 節次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는 도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도산의 처리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입법이다. 그리고 이들 절차가 기업으로 하여금 상황을 치유하게 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은 更生節次를 신청할 수 있다.

倒産防止節次로는 1984년의 법률(1984년 3월 1일 법률 제148호)에 의하여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règlement amiabil)'와 '警告節次(procédure d'alerte)'가 도입되었고, 그 후 1994년 개정에서 실무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特別管理人(mandataire ad hoc)에 의한 整理節次'가 도산방지절차에 편입되었다.

II.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

1. 概要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règlement amiabil)'는 1984년에 도입된 도산방지절차의 하나이다.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는 商事法院長에 의하여 선임된 調整人(conciliateur)이 상사법원장의 감독하에 재무상태가 악화된 채무자와 주요한 채권자 간의 채무관계를 조정하고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和解에 의한 整理契約'을 체결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화해에 의한 정리계약에서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컨대, 債權의 抛棄·辨濟期間의 猶豫·債務者의 増資 등을 정한다.

商事法院長은 이러한 화해에 의한 정리계약을 결정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화해에 의한 정리계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화해에 의한 정리계약의 성립까지의 과정에서 調整人을 중심으로 하여 채권자·채무자간에 채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상사법원장은 빈번

하게 조정인의 보고를 받으며 때때로 직접 채권자·채무자간의 교섭에 개입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크다.

2. 節次

1) 申請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는 債務者만이 상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사법원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의 신청을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실무가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채무자의 회계검사인 또는 종업원대표로 구성되는 企業委員會(comité d'entreprise)는 상사법원장에 대하여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에게 권고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사법원장은 권고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 調整人の 선임과 節次期間

상사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調整人은 본래 商事法院의 首席法官이 임명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무를 보면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管理人 중에서 선임되고 있다. 조정인의 보수는 사건의 규모 또는 난이도에 따라 상사법원장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이러한 보수는 채무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한다. 절차기간은 3월이지만 조정인의 요구에 의하여 1월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인의 선임은 상사법원장이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의 진행 중 특정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特別管理人(mandataire ad hoc)을 선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특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중복적으로 조정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인과 특별관리인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먼저 특별관리인을 선임하고 그를 다시 조정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3) 節次의 密行性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는 정식의 도산절차와는 달리 비공개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수행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94년 법개정에 의하여 調整

인이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된 결과, 官報상의 公示를 통하여 적어도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것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3. 執行停止 및 辨濟禁止

1) 執行停止

1984년법에서는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가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强制執行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를 위한 訴訟의 提起를 저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 인하여 화해에 의한 정리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다.

1994년법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화해에 의한 정리는 ① 채무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자에 의한 소송상의 절차를 정지시키고, ②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전부 또는 일부의 금전불지급을 이유로 하여 계약파기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從業員의 賃金債權에 관하여는 이러한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2) 辨濟禁止

전술한 채권자에 의한 모든 소송의 금지는 商事法院長에 의한 특별한 許可가 없는 한 채무자가 화해에 의한 정리의 결정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채무자의 변제는 無效이다. 또한 채권자는 일상의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사법원장의 특별한 허가없이 財產을 賣却할 수 없다.

4. 商事法院長의 裁量權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에 있어서는 債務者의 經營者가 그대로 영업을 계속할 것을 그 전제로 한다. 調整人도 商事法院長도 스스로 화해에 의한 정리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고 채무자에게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상사법원장이

이를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상사법원장이 사회·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특정한 정책하에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를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²⁰⁾

III. 警告節次

1. 概要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있는 기업이 도산절차의 개시전단계에서 상사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와에 합의를 도출하여 청산을 회피·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의 기간은 최장 4개월이고, 주요한 채권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는 選擇枝는 청산절차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의 한계를 극복함과 아울러 도산방지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4년 개정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찾아내어 개선을 권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警告節次(procédure d'alerte)'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 자체는 1984년법 제34조에 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동조에 기초하는 調整節次의 不完全性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개정에서 1991년부터 파리와 리옹 등의 규모가 큰 상사법원에서 실무상 활용되어 온 관행을 제도화한 것이다. 1994년 개정의 주된 내용은 채무자의 경영자에게 도산방지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으로는 조기의 조정절차신청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채무자의 중요한 경영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商事法院이 주도적으로 도산방지의 주도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²¹⁾

2. 節次開始

경고절차는 商事法院長의 직권으로 또는 監事 및 從業員代表(délégué du

20)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95년까지 상사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Rouger는 프랑스 부동산시장붕괴의 영향이 대출은행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청산절차의 개시로 귀결되지 아니하도록 한 바 있다. Rouger의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의 적극이용 방침은 1994년법에 의한 執行停止의 도입 등으로 이어졌다. 그 후 후임소장인 Mattei도 이와 같은 관행을 계속 잊고 있다고 한다. 小杉丈夫, "フランスにおける倒産豫防手續の實務", 前掲論文, 256面.

21) 上掲論文, 257面.

personnel)로 구성되는 企業委員會(comité d'entreprise) 또는 株主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사법원장의 직권에 의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상사법원장은 회사의 존속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회사의 經營者를 소환하여 비밀회의를 가질 수 있다(1984년법 제34조). 실무상으로 대부분의 회합은 상사법원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商事法院의 首席法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러한 회합에서 상사법원장(현실적으로는 수석법관)은 회사의 현재의 재무상태 및 회사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원칙적으로는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와는 달리 상사법원장의 역할이 경고절차를 개시하고 주도하는데 그치고 도산방지를 위한 그 이상의 적극적·능동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상사법원장은 채무자의 경영에 대한 조언자로서 행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商事法院長은 첫째, 경영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조력하는 事業専門家로서의 역할을 하고, 둘째,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청산절차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영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法官으로서의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1994년법은 '현상황의 개선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상사법원장이 조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상사법원장은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고절차는 완전하게 비밀로 진행된다.

3. 節次開始의 基準

1985년법은 제34조에서 警告節次開始의 要件으로 '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여 실제적으로는 商事法院長에게 광범위한 裁量權이 부여되고 있다고 한다. 파리상사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경고절차개시의 세부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 (1)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낮은 경우
- (2) 과세당국 또는 사회보장기금에 의한 선취특권의 등기가 행하여져 있는 경우
- (3) 정기주주총회가 연기되고 있는 경우
- (4) 회사에 대한 다수의 채권회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5) 회사의 임원 또는 이사의 변경에 의혹이 있는 경우

이처럼 상사법원장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해 회사에 관한 자료가 상사법원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회사의 定款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計算書類는 상사법원에 제출되고 商業登記簿(registre du commerce)에 등록된다. 또한 상사법원장은 이들 등록사항 이외에도 예컨대, 8만프랑 이상의 세액이나 사회보장채권의 지급이 연체된 경우에는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은 도산절차중에 優先的 權利를 행사할 수 없다. 營業權에 대한 質權設定(nantissement de fond de commerce) 기타 일정한 會社財產에 대한 質權設定(nantissement de matériel et d'outillage) 또는 金融리스契約書(crédit - bail)도 등록된다.

상사법원장은 商事法院의 書記局(greff du tribunal de commerce)을 통하여 관할내에 本店이 있는 會社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프랑스는 정보처리의 발달에 힘입어 상사법원장이 경고절차를 발할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제공하기 위하여, 상사법원의 서기가 재정상 곤란에 처해 있는 회사를 추출하고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정보는 'Infogreff'라고 불리우는 컴퓨터서비스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4. 商事法院長과 經營者의 회합

상사법원장이 경영자를 호출하는 경우 법정통지기간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경영자가 회합에 관한 자료수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3주간의 通知期間을 부여하고 있다.

회합의 내용은 報告書로 작성되고 출석자가 이에 서명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상사법원의 등기부에 보관되는데, 당해 상사법원 또는 사법부로부터 특별히 명시적으로 허가된 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상사법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사법원장은 재차 경영자와의 회합을 가질 수 있다. 상사법원장은 경영자와의 회합후 감사, 행정관청, 사회보장기관, 프랑스 국립은행 등으로부터 당해 회사에 관한 추가정보를 수집한다.

경영자가 호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사법원장이 호출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경영자가 결석한 경우 缺席調書(procès - verbal de carence)가 작성되고, 상사법원의 등록부에 회합의 통지와 함께 보관된다. 다만, 결석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경영자에 대한 책임추급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보다 커진다.

1994년 법률에 의하면 상사법원은 회사가 支給停止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절차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1985년 법률 제148조 참조). 경영자가 결석하거나 상당기간내에 만족할 만한 再建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사법원장은 당해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를 조사할 법관을 임명하는데, 이러한 법관은 清算人 중에서 檢查人(enquêteur)을 지명하여 당해 회사를 조사하게 한다. 상사법원은 청산인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한 청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5. 警告節次의 實效性

프랑스에서는 警告節次가 일정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파리의 상사법원장이었던 Rouger는 1995년의 경고절차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²²⁾

“20%의 사건에서는 절차개시후 재무상태가 급속하게 호전되어 더 이상 경고절차의 진행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5%의 사건에서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지급정지가 확인되고 재건불능인 것으로 판명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신속하게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였다. 55%의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의 회복을 좀 더 지켜보거나 즉시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IV. 特別管理人에 의한 整理節次

1. 概要

앞서 도산방지절차로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와 그 전단계인 경고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를 두가지 절차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면서 이들 절차를 연결 또는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도산방지절차로 '特別管理人에 의한 整理節次(mandat ad hoc)'가 있다.

22) 上揭論文, 258面.

특별관리인에 의한 정리절차는 본래 파리상사법원의 실무관행으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그 절차가 유연성·비밀보지성 및 능률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법률에 도입된 것이다.

特別管理人에게 부여되는 임무는 회사의 재무상태의 회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걸친 것도 있지만, 특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명령이 내려지는 것도 있다. 이하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의 경우에 관하여 고찰한다.

2. 節次의 開始

1984년법을 개정한 1994년법은 제35조에서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에 관한 규정에 더하여 '상사법원장은 特別管理人을 임명하고 그 임무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特別管理人에 의한 整理節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특별관리인에 의한 정리절차가 경영자로부터 그 권한과 의무를 박탈하거나 채권자의 권리와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 (2) 일반적으로 특별관리인에 의한 정리절차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채무자, 채무자의 재건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 기타 조력자 등과 협의하여 가능한 재건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3) 특별관리인에 의한 정리절차는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와는 독립된 것이다. 채무자의 재정상 어려움의 해결(예컨대,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변제기간의 유예 등)은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로 이행함이 없이 특별관리인에 의한 정리절차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 (4) 특별관리인에 의한 정리절차는 비밀로 진행된다.

3. 特別管理人の 選任

특별관리인은 管理人 중에서 선임한다. 특별관리인은 상사법원장에 대하여 절차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報告書에는 회사가 당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무가 종료하는 때에는 특별관리인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비밀로서 취급되고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아니한다. 특별관리인의 任期는 법률상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데 통상 3월로 하는 것이 파리상사법원 등의 실무관행이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갱신하고 있다.

특별관리인은 채무자의 경영에 대하여 助言·勸告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치고, 채무자를 위하여 스스로 청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를 신청할 권한은 없다.

특별관리인의 報酬는 채무자와 특별관리인 간의 계약에서 정하여진다. 통상 보수는 着手金과 成果給의 조합에 의한다. 성과급은 채권자와의 교섭에서 얼마나 채무가 감축되었는가에 의한다. 법률상 법원의 관여는 요구되고 있지 않지만, 특별관리인의 선임신청중에 보수에 관하여 채무자와 특별관리인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상사법원에 이를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선임결정중에 보수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처음부터 특별관리인과 합의한 보수계약의 내용을 상사법원이 그대로 선임결정중에 확인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

4. 警告節次의 동결 및 破産節次의 회피수단으로의 이용

어떤 기업에 대하여 경고절차가 개시되고 수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로부터 상사법원장을 만족할 만한 재무구조개선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사법원장은 당해 기업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법관을 지명하고 그 법관은 檢查人(enquêteur)을 임명한다. 이러한 검사인은 清算人 중에서 선임된다.

특기할 만한 점은 청산인은 통상 검사인의 임무를 상사법원의 禮讓이라고 칭하여 無料로 인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사법원장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서는 청산절차의 개시가 적절하다는 내용의 것이 대부분이고, 절차가 청산으로 이행하는 때에는 상사법원장은 그 검사인을 청산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즉, 청산인은 청산절차에서 보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봉사는 충분하게 보상받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검사인의 임명은 곧 청산절차의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고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이러한 청산절차개시의 위험을 회피하고 시간을 확보하여 재무구조개선안 또는 재건안을 수립할 목적으로 상사법원장에게 特別清算人の 임명을 신청한다고 한다.

5.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 開始의 연장수단으로의 이용

전술한 바와 같이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의 기간은 개신을 포함하여 법률상 최장 4월로 정하여져 있고 그 이상의 연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는 再建案의 作成에 적어도 4월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特別관리인을 선임하고 特別管理人에 의한 整理節次를 전치함으로써 기간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特別清算人에 의한 정리절차중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再建案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特別관리인의 선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은 상사법원장에게 있지만, 통상 債務者가 추천하는 관리인을 特別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特別관리인에 의한 정리절차로부터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통상 特別관리인이 그대로 調整人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特特別관리인 선임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가 상사법원장에 의한 조정인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또한 特特別관리인에 의한 정리절차로부터 갱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特特別관리인이 그대로 清算人 또는 管理人이 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의도하는 관리인을 상사법원장이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상의 조정인이나 청산절차상의 청산인으로 임명하여 주도록 하기 위하여 전단계로서 特特別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²³⁾

6. 사실상의 特別管理人으로서의 管理人

전술한 바와 같이 債務者는 경고절차의 진행을 동결시키기 위하여 상사법원장에게 特特別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特特別관리인의 선임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特特別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사법원장은 채무자가 지명하는 管理人이 特特別管理人的 선임없이 사실상 特特別관리인의 역할을 달성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채권의 내용이 단순하고 복수의 채권자와의 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 관리인은 채무자와 상사법원장 간에 개재하여 상사법원장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재무구조개선안 또는 재건안의 작성에 노력하고 그 추진현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상사법원장에게 보고한다. 채무자로서는 상사법원장이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받아 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평판이 높은 관리인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管理人이 사실상 特特別管理人的 역할

23) 上揭論文, 258面.

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은 어디까지나 私的으로 채권자를 대표하는 일종의 조언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테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보수는 관리인과 채무자간의 계약에서 결정되고 상사법원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²⁴⁾

24) 上掲論文, 260面.

第3章 更生節次

I. 序說

프랑스 도산법은 更生節次(redressement judiciaire)를 중심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갱생절차의 목적은 債權者에게 있을지 모르는 損害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企業을 救濟함과 동시에 雇傭을 維持하는 것이다(제1조). 갱생절차에는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거나 세후매출액이 2,000만프랑을 초과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標準的인 節次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簡易更生節次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제2조제2항). 그러나 법원은 표준적인 절차가 기업의 구조재편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小規模會社에 대하여도 표준적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설립된 外國會社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제138조제1항). 이하에서는 표준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갱생절차를 설명한다.

II. 更生節次의 開始

1. 更生節次의 申請 및 管轄

1) 갱생절차는 支給停止를 그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채권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시된다(제3조 및 제4조). 갱생절차개시가 결정되면 당해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의 지급은 법률상 당연히 금지된다(제33조제1항).

2) 갱생절차는 채무자가 상인 또는 수공업자 등인 경우에는 商事法院(tribunal de commerce)이 관할법원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大審法院(tribunal de grande instance)이 관할법원이 된다(제7조).

2. 支給停止의 概念

프랑스 도산법에 있어서의 支給停止란 '처분가능한 자산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제3조제1항 참조)' 즉, '그 시점에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실제로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²⁵⁾ 법원은 갱생

절차개시의 신청시 신청인이 제시하는 支給停止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한 날을 지급정지일로 정한다. 지급정지일은 개시결정일로부터 18월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다(제9조). 이처럼 법원이 지급정지일을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지급정지의 상태에 있으면서 경영자가 도산절차의 신청을 지체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⁶⁾ 또한 이러한 지급정지일이 언제인가는 개시결정전 채권의 否認 여부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지급정지일로부터 개시결정일까지의 기간을 疑問期間(période suspecté)이라고 하고, 이 기간중에 행하여진 채무자에 의한 채무변제·담보설정 및 무상 또는 저가의 양도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이다(제107조 참조).

3. 倒産節次關係人

1) 법원은 생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생생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受命法官(juge commissaire) 및 倒産節次關係人(mandataire de justice)으로서 회사의 영업을 관리하고 생생계획안을 작성할 管理人(administrateur)과 債權者代表(représentant des créanciers)를 선임한다(제10조). 또한 법원은 기업위원회 또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내부에서 從業員을 代表할 자를 선임하도록 한다(제10조제1항).

2) 관리인은 1인 또는 수인의 鑑定人(expert)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제10조 제2항), 수명법관은 신청한 채권자 중에서 수명법관과 채권자대표를 보조할 1인 내지 5인의 檢查人(contrôleur)을 선임할 수 있다(제15조).

III. 觀察節次

1. 概要

생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당해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의 지급은 법률상 당연히 금지되고, 통상 6월의 觀察節次(procédure d'observation)가 진행된다(제8조). 이 기간동안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管理人(administrateur)은

25) 支給停止의 개념정의는 判例와立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결과, 프랑스에서는 更生節次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쟁이 상대적으로 드물었다고 한다, Hubert Lafont, op. cit., p.17.

26) C. J. Mesnooh, LAW AND BUSINESS IN FRANCE, Kluwer, 1994, pp.151~152.

회사의 재무상태와 고용현황 등을 평가하고 貸借對照表와 社會貸借對照表 및 企業의 繼續 또는 讓渡를 내용으로 하는 更生計劃案을 작성한다(제8조제1항). 이 기간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18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제8조제2항). 관찰기간의 종료전에 법원은 기업의 계속 또는 양도에 관한 更生計劃을 인가하거나 清算節次의 개시를 결정한다(제8조제3항).

2. 貸借對照表, 社會貸借對照表 및 更生計劃案의 작성

1) 作成義務者 및 更生計劃案의 내용(제18조)

- (1) 관리인은 채무자 및 감정인의 협조하에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사회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대차대조표 등을 고려하여 관리인은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제안한다.
- (2) 貸借對照表 등에는 기업이 직면한 재정적 파탄상태의 원인, 정도 및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 (3) 更生計劃案에서는 간생가능성, 영업활동방식, 시장현황 및 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간생의 전망을 평가한다. 또한 간생계획안에는 채무변제방법과 기업주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이행방법을 정하고, 영업활동의 계속을 위하여 기업에 필요한 고용의 수준과 조건을 기술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예정된 종업원의 복직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情報 · 資料의 입수 및 報告

- (1) 受命法官은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확한 情報를 얻기 위하여, 회계검사인(commissaire aux comptes) · 종업원대표 · 행정관청 · 공공기관 · 공제기관 · 사회보장기관 · 신용평가기관 및 금융위험과 지급사고를 담당하는 기관 등 기업의 경제적 · 재정적 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19조).

- (2) 管理人은 수명법관으로부터 그 직무 및 감정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는다(제20조제1항). 또한 관리인은 채무자 및 채권자대표를 비롯하여 기업현황, 간생전망, 채무변제방법 및 영업활동의 계속과 관련한

고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20조 제3항).

(3) 채무자, 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종업원대표, 검사인 및 채권자대표는 관리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25조제1항). 또한 관리인은 법원, 수명법관, 검사 및 노동법상의 관할행정관청에 대하여도 보고의무가 있다(제25조제2항).

3) 第3者의 請約(제21조)

생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자는 관리인에게企業의 繼續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청약할 수 있다. 이러한 청약은 관리인이 報告書를 제출한 날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청약을 한 자는 법원의 更生計劃의 인가에 관한 결정 시까지 당해 청약에 의하여 구속된다.

4) 資本의 變更(제22조)

관리인은 법원에 자본의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계속의 계획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에게 그 사안에 따라臨時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5) 經營者の 改任 여부(제23조)

법원은 기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經營者の 改任을 조건으로 하여 생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기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상·사실상의 여부 및 유상·무상의 여부를 불문하고 1인 또는 수인의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株式·持分 또는 議決權證書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6) 債務辨濟計劃(제24조)

관리인은 수명법관의 감독하에 債務辨濟計劃을 작성하고 채권자대표, 검사인 및 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觀察期間중의 企業에 대한 취급

1) 保全措置(제26조)

管理人은 직무가 개시되면 企業主에게 채무자인 기업의 권리의 보존 및 기업의 생산능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기업주가 취득 또는 갱신을 해태한 모든 저당권, 질권 기타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企業의 名義로 이를 등록할 권한이 있다.

2) 企業의 經營

(1) 企業의 業務執行

① 管理人の 任務(제31조)

법원은 관리인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자에 대하여 경영활동의 감독, 채무자의 경영의 보조 또는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의 임무를 명할 수 있다.

② 債務者の 權限(제32조)

채무자는 자산의 처분행위, 관리행위 및 관리인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판상·재판외의 권한을 계속 행사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단독으로 행한 일상적인 업무집행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受命法官의 權限(제33조)

수명법관은 기업주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기업의 계속을 위한 처분, 담보권의 승인, 중재계약의 체결 및 화해계약의 체결 또는 담보물의 반환을 위한 개시결정 이전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명할 수 있다.

④ 資產의 賣却 등(제34조)

優先的 權利가 있는 債權, 質權 또는 抵當權의 목적이 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담보권있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자산 전체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내에 채권이 신고된 경우 갱생계획의 인가 또는 청산절차개시의 결정 이후 그들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금액의 변제를 받는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假支給(paiement provisionnel)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담보가치를 가지는 담보로交替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교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명법관이 당해 담보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2) 營業活動의 繼續 등

① 營業活動의 繼續

企業의 營業活動은 원칙적으로 관찰기간동안에도 계속된다(제35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 채권자대표, 검사인, 채무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명법관의 보고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명하거나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제36조).

② 繼續的 契約의 履行 여부(제37조)

管理人만이 채무자의 繼續的 契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계속적 계약의 상대방이 관리인에게 그 이행여부를 최고한 후 1월내에 회답이 없으면 解止된 것으로 본다. 한편 계속적 계약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간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계약불이행은 당해 채무에 대한 채권의 신고 이외에 채권자에게 利子請求權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관리인이 계약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은 損害賠償責任을 발생시키고 그 금액은 상대방의 채권으로 신고되는데,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③ 貸貸借契約에 대한 취급

- i. 임대인은 간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 2월후부터 차임의 불지급 및 당해 법원의 결정 이후 관리인의 직무해태를 이유로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貸貸借契約의 解止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8조제1항). 그러나 관찰기간동안 기업이 임차한 부동산의 하나 또는 수개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제38조제2항).
- ii. 간생절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절차의 개시결정전 최종 2년간의 借貸에 대해서만 優先的 權利를 가진다(제39조제1항). 또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년도분의 차임, 임대차의 실행과 관련된 금액 및 법원이 임대인에게 할당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제39조제2항). 임대차가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계약당시의 담보가 유지되고 있거

나 절차개시의 결정시에 제공된 담보가 충분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제39조제3항). 한편 受命法官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에게 임차한 토지에 부착된 동산으로서 장래 노후화될 것, 급격한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것, 그 보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 또는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營業財產性(pexistence du fonds) 및 임대인을 위한 담보의 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9조제4항).

④ 節次開始決定 이후의 定期的 債權(제40조)

생생절차개시의 결정 이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營業活動이 繼續되는 한 그 만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 전부의 양도, 청산 또는 영업활동이 계속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貸金債權 등 優先的 權利가 있는 채권에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⑤ 管理人 등의 受領(제41조)

관리인 또는 채권자대표가 수령한 금액으로서 채무자의 은행계정 또는 우편계정에 입금되지 아니한 것은 영업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즉시 供託計定에 이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체가 지연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채권자대표는 이체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5%의 法定加算金과 동률의 이자를 부담한다.

⑥ 營業의 貸貸借(제42조)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찰기간중에 최장 2년의 기간으로 營業의 貸貸借契約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이에 반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업의 소멸이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다.

3) 扱傭現況

(1) 從業員代表의 貸金債權 등 調査(제44조)

從業員代表는 채권자대표로부터 勤勞契約으로 인한 채권의 조사를 위하여 그 명세표를 제출받는다. 종업원대표는 秘密維持義務를 부담하고, 종업원대표가 수명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한 시간은 법률상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2) 觀察期間 중의 解雇(제45조)

관찰기간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해고가 급박하고 절실하며 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管理人은 수명법관의 승인을 요청하여 이러한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수명법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기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할권있는 행정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수명법관에게 승인을 요청함에 있어 수집된 의견과 함께 損害賠償 및 人力再配置에 관한 자료를 증거물로 첨부할 수 있다.

4) 債權者現況

(1) 債權者代表(제46조)

검사인의 권한과는 별개로 법원이 선임한 債權者代表단이 채권자들의 명의로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할 권한을 가진다. 채권자대표는 검사인이 행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명법관 및 검사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관찰의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채권자대표가 수령한 금액은 債務者의 資產의 일부가 되고 기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債務의 決濟를 위하여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충당된다.

(2) 個別的 訴訟上 請求의 中止(제47조)

생생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생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일정금액의 지급 및 일정금액의 지급해태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訴訟상의 請求가 중지된다. 또한 채권자에 의한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強制執行節次도 중지된다. 이들 경우에 있어서는 消滅時效가 중단된다.

(3) 債權申告

- ① 生생절차개시의 결정이 공고되면 從業員을 제외한 生생절차개시의 결정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자는 채권자대표에게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시된 담보권있는 채권자나 공시된 리스계약의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생생절차개시의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는다(제50조).
- ② 채권의 신고에는 생생절차개시의 결정일 당시의 채권액, 만기일 및 만기시의 채권액을 비롯하여 우선적 권리의 유무, 그 종류 및 채권에 부수하는 담보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제51조제1항). 이 경우 외국환채권의 프랑화로의 환

산은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일의 기준환율에 의한다(제51조제2항). 신고된 채권은 채권자가 그 진실성에 관한 立證責任을 부담한다(제51조제3항).

③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換價 및 配當에 참가할 수 없다(제53조제1항 제1문). 다만, 채권자가 자신의 불신고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수명법관이 그 권리를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당해 청구 이후에 행하여지는 배당에만 참가할 수 있다(제53조제1항 제2문 및 제3문).

(4) 利子計算의 停止와 期限의 利益의 維持(제55조)

- ① 법률상 · 계약상의 이자기간은 그 성질이 자연이자든 배상금이든 불문하고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인하여 정지한다. 다만, 1년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또는 1년이상의 분할지급을 수반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기간의 정지가 保證人과 共同債務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자연인인 보증인에 대한 모든 소송은 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인하여 갱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 또는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예된다. 또한 법원은 2년의 범위내에서 보증인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 또는 연기할 수 있다.

IV. 企業의 繼續 또는 讓渡에 관한 更生計劃

1. 更生計劃의 認可

1) 認可의 決定(제61조)

법원은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대표, 검사인 및 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식절차에 따라 이들을 소환한 후 관리인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更生計劃을 인가하거나 清算節次의 개시를 결정한다(제61조제1항). 즉, 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갱생계획은 기업의 계속,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갱생계획은 企業의 繼續, 讓渡 또는 부분적인 양도와 부분적인 계속의 결합의 3가지 중 하나를 그 내용으로 한다(제61조제2항).

2) 更生計劃의 내용

(1) 갱생계획에는 영업활동의 전망, 기업유지의 형태와 회계방식, 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변제 및 필요한 경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고용의 수준과 전망 및 영업활동의 계속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제62조).

(2) 갱생계획에서 經濟的인 理由로 인한 解雇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위원회,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대표 및 관할행정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그 의견을 참고한 후가 아니면 법원은 이를 인가할 수 없다(제62조제1항). 갱생계획의 인가후 1월내에 행하여져야 하는 해고는 갱생계획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제62조제2항).

3) 更生計劃의 期間(제65조)

갱생계획의 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이 기간은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농업자인 경우에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更生計劃의 執行人(제67조)

(1) 법원은 갱생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 執行人(commissaire à l'exécution)을 선임한다. 管理人 또는 債權者代表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명될 수 있다. 갱생계획의 인가결정 이전에 제기된 소송은 관리인이 제기한 것이든 채권자대표가 제기한 것이든 불문하고 집행인에 의하여 계속 유지된다. 또한 집행인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갱생계획의 미집행을 법원장과 검사에게 보고하고 기업위원회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기업주의 청구에 의하고 집행인의 보고서를 참고하는 경우에만 갱생계획의 목적 및 수단에 관한 중요한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제68조).

2. 企業의 繼續

1) 企業繼續의 決定

(1) 법원은 관리인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상당한 정도의 更生可能性과 債務辨濟

可能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계속을 결정한다(제69조제1항). 기업의 계속은 필요한 경우 기업의 일부의 확장 또는 일부의 양도를 수반할 수 있다(제69조제2항).

(2) 법원은 생생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에서 기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대하여 기업이 정하는 기간동안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70조).

2) 法人の 定款의 變更

생생계획은 기업의 계속에 필요한 定款의 變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법원은 생생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면서 管理人에게 생생계획에서 정한 정관변경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總會의 소집을 명한다(제71조 및 제72조).

3) 債務의 辨濟方法

(1) 법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채권자들이 동의한 債務의 減額 또는 辨濟期間의猶豫를 승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완화할 수 있다(제74조제1항). 위의 기간은 생생계획상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제1회의 지급은 인가 결정후 1년내에 행하여져야 한다(제74조제2항). 금융리스계약의 경우에는 만기도래전에 이용자가 선매권을 행사하면 그 기간이 종료한다(제74조제3항).

(2) 更生計劃은 채권자를 위하여 보다 짧은 공통된 기간내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감액된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제75조제1항). 이 경우에는 생생계획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75조제2항).

(3) 特定한 債權의 取扱

- ① 일정한 勤勞契約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감액 또는 기간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76조제1항).
- ② 가장 後順位인 債權者들은 추산된 채무의 5%의 범위내에서 법원의 명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액이 적은 채권자부터 순서대로 기간유예 또는 채무의 감액없이 상환을 받는다(제76조제2항).
- ③ 특별한 優先的 權利, 質權 또는 抵當權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양도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나 일반적인 우선적 권리(우선권)를 가진 채권자는 일정한 勤勞契約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한 변제가 행해진 후에 그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제78조제1항).

4) 認可의 取消 또는 清算節次의 開始(제80조)

채무자가 更生計劃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나 집행인의 청구에 의하여 갱생계획의 인가를 取消하거나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3. 企業의 讓渡

1) 通 則(제81조)

企業의 讓渡는 독자적인 경영의 가능성 있는 營業活動 및 이에 부수하는 雇傭關係의 전부 또는 일부의 維持를 보장하고 債務를 辨濟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관리인의 보고를 참고하여 기업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기업의 양도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데, 一部讓渡는 그 자체로서 영업활동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부서 중 하나 또는 수개의 영업요소의 총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기업계속의 계획이 없는 경우 양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산은 매각되고 채무자의 재판상·재판외의 권리는 집행인에 의하여 집행된다.

2) 企業讓渡의 方法

(1) 기업양도는 법원이 그 구성내용을 정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영업요소의 총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명하여질 수 있다(제82조).

(2) 모든 請約은 관리인이 채권자대표 및 검사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두고 관리인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제83조).

이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청약의 본질 및 청약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제84조).

(3) 법원은 양도되는 총체에 부수되는 雇傭關係 및 債權者에 대한 支給을 최선의 조건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청약을 승락한다(제85조).

3) 讓受人の 義務

(1) 양수인은 대금의 전액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양수인은 재고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취득한 유체자산 또는 무체자산을 讓渡 또는 貸貸할 수 없다(제

89조제1항). 양수인이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執行人은 기업위원회 또는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法院은 이에 따라 양수인의 처분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제89조제2항). 모든 利害關係人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그 종료일부터 3년내에 取消를 청구할 수 있다(제89조제3항).

(2) 讓受人은 집행인에게 양도후 각 영업분야별로 행하여진 개생계획상의 처분 규정의 적용결과를 報告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집행관 또는 채권자대표의 청구에 의하여 개생계획의 인가의 取消를 명할 수 있다(제89조제4항).

(3) 법원은 직권으로 일정기간동안 양도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다는 조항을 讓渡計劃에 포함시킬 수 있다(제89-1조).

(4)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집행인,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特別管理人(administrateur ad hoc)을 선임하고 그 직무를 결정할 수 있다(제90조).

4) 債權者에 대한 效果

(1) 법원이 기업의 全部를 让渡하는 更生計劃을 인가하는 경우 채권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91조).

(2) 기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에 필요한 행위, 대금의 지급 및 개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의 처분이 있은 후 營業活動의 폐지를 선고한다(제92조제1항). 이 경우 대금은 執行人에 의하여 채권자들에게 각각의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제92조제2항). 또한 채권자들은 개생절차의 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일정범위내에서 個別的인 訴訟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한다(제92조제3항).

5) 營業의 貸貸借

(1) 법원은 양도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고용관계 및 채권자의 지급을 최선의 조건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청약하는 자에 대하여 營業貸貸借契約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제94조).

(2) 執行人은 영업의 貸借人에 대하여 그의 직무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영업의 임대차에 관한 모든 장애요인 및 임차인에게 부과

된 의무의 불이행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95조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집행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營業貸貸借契約의 解止 또는 更生計劃認可의 取消를 명할 수 있다(제95조제2항). 갱생계획인가의 취소로 임대인에 대하여 새로운 갱생절차가 개시되고, 차임에 의한 배당이 예정되어 있는 채권자들은 그들의 채권 및 담보채권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전액을 회복한다(제95조제3항).

(3) 영업의 임대차의 경우 양도계획의 인가의 결정일로부터 2년내에 실제로 기업이 이전되어야 한다(제97조).

(4) 영업임대차의 貸借人이 계획에서 정하는 조건과 기간에 관한 引受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측의 지급정지를 증명함이 없이 집행인, 검사 또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갱생절차가 개시된다(제98조제1항). 그러나 영업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이전까지 집행인에게 통지한 후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조건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임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그 條件의 變更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98조제2항).

V. 企業의 資產

1. 債權의 調査 및 確定

1) 資產不足의 경우(제99조)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의 경우, 자산처분의 결과의 전액이 절차비용 및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에 흡수되는 때에는 無擔保債權의 조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률상 · 사실상 및 유급 · 무급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경영자에게 부담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債權의 申告 · 調査 및 確定

(1) 債權者代表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후 인가, 불인가 또는 연기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신고된 채권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목록을 수명법관에게 송부한다(제100조제1항). 채권자대표가 위의 기간내에 작성 · 제출하는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채권은 변제를 받을 수 없다(제100조제2항).

(2) 受命法官은 채권자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여 채권의 확정 또는 거절을 결정하

거나 이에 관한 소송의 계속 또는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한다(제101조제1항). 다만, 法院은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및 채권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들을 정식으로 소환한 후가 아니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관할권이 없음을 결정하지 못한다(제101조제2항).

2. 否認權

- 1) 否認權의 행사는 채무자의 자산을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管理人, 債權者代表, 清算人 또는 執行人이 이에 관한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10조).
- 2)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정지일 이후의 자산의 無償讓渡行爲 등을 取消할 수 있다(제107조제1항).²⁷⁾ 또한 이들 행위가 지급정지일 이전 6월동안 무상으로 행해진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07조제2항).
- 3) 지급정지일 이후에 유효하게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와 지급정지일 이후에 행하여진 유상의 행위라도 支給停止의 사실을 알고 채무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08조).
- 4)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어음 또는 手票의 지급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09조제1항). 그러나 관리인 또는 채권자대표는 환어음의 소지인, 계산을 위한 발행의 경우 그 위탁자, 수표의 소지인 및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이유로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09조제2항).

3. 配偶者의 權利

갱생절차가 적용되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각각의 자산은 夫婦財產制度의 原則에 따라 정한다(제111조). 債權者代表 또는 管理人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취득한 자산이 채무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당해 자산을 채무자

27)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제107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1.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2. 채무자가 상대방에 비하여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
4. 현금, 상업증권, 대체결제, 양도증서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급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행하여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5. 금액의 기탁 및 공탁(민법 제2075-1조 참조)
6. 지급정지일 이전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산에 계약상·소송상 저당권, 배우자의 법정저당권 및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7. 보전처분행위

의 자산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12조).

4. 動產賣渡人の 權利와 所有權에 기초한 返還請求

1) 動產의 所有權에 기초한 返還請求는 생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결정의 공고일로부터 3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115조제1항). 절차개시일에 繼續的 契約의 目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제115조제2항).

2) 賣買契約이 생생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법원의 결정이나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나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返還請求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제117조).

3) 매매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부된 물건의 인도는 債務者의 營業所 또는 채무자의 계산으로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受任인의 營業所에서 행해지지 아니하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18조제1항). 그러나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는 화물의 도착전에 貨物相換證 등에 의하여 하자없이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제118조제2항).

4)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소유자가 변제를 위하여 또는 특정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맡긴 어음 기타 未支給된 有價證券은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제120조).

5)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매의 목적물은 현물이 존재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保管證書에 의하는지 所有者的 計算으로 매각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제121조항).

6) 관리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 채권자대표 또는 청산인은 자산의 소유권회복청구 또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債務者の 同意를 얻어 이를 승락할 수 있다. 채무자의 동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채권자, 채무자 및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수임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受命法官이 그 가부를 결정한다(제121-1조).

VI. 雇傭契約에서 발생하는 債權에 대한 辨濟

1. 債權의 調査

1) 채권자대표는 조사후 일정기간내에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를 정식으

로 소환한 후 雇傭契約에서 발생한 債權의 明細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채권의 명세표는 종업원대표에게 제출되고 수명법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서기국에 제출·공고된다(제123조제1항).

2) 자신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의 명세표에서 누락된 종업원은 위의 공고가 있는 후 2월내에 勞動法院(*conseil de prud'hommes*)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從業員代表로 하여금 노동법원에서 자신을 보조하거나 대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제123조제2항).

2. 勤勞者의 優先的 權利

1) 勤勞契約에서 발생한 債權은 갱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의 결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優先的 權利에 의하여 보호된다(제128조).

① 노동법 규정에서 그 요건과 액수를 정하고 있는 우선적 권리(노동법 제143-10조, 제143-11조, 제742-6조 및 제751-11조 참조)

② 민법 규정에서 정하는 우선적 권리(민법 제2101조 및 제2104조제2호 참조)

2) 管理人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모든 채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갱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10일내에 수명법관의 명령에 의하여 위의 勞動法規定에서 정하는 優先的 權利를 보장받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제129조제1항). 또한 관리인은 채권신고 이전에 수명법관의 감독을 받아 처분 가능한 자산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노동법규정(노동법 제143조-10조 참조)에서 정하는 한도로 가집행의 형태로 최후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未支給된 賃金 중 1월분을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129조제2항).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그 지급될 금액은 최초의 수입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제129조제3항).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기업주는 갱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에 있어서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保險에 가입할 것이 법률에 의하여 요구된다.²⁸⁾

VII. 簡易更生節次

1. 概要

簡易更生節次(redressement judiciaire)는 종업원이 50인이하이거나 종업원의

28) C. J. Mesnooh, op. cit., p.155.

세후급여가 2,000만프랑이하인 회사에 적용되는 개생절차이다(제137조). 그러나 법원은 표준적인 절차가 기업의 개생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小規模企業에 대하여도 標準的인 節次를 적용할 수 있다. 즉, 법원은 개생계획의 인가의 결정시까지 직권으로 또는 채무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편에서 정하는 절차가 기업의 개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절차의 전부를 적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開始決定 및 觀察期間

1) 開始決定(제139조)

법원은 개생절차개시의 결정에서 수명법관과 채권자를 대표할 법적 의무가 있는 1인의 管理人을 선임한다. 다만, 기업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종업원대표기관 또는 종업원대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이를 대표한다.

2) 觀察期間

(1) 觀察期間의 최장기간은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채무자, 검사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참사원이 정하는 명령에 따라 이를 선고한 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개신할 수 있고, 법원은 농업자의 경우 관계된 특정한 생산물의 경작기간의 종료시까지 관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40조).

(2) 관찰기간동안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없이 영업활동을 행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한다(제141조).

(3) 법원은 관찰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업의 개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영업활동의 계속을 결정하거나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한다.

3. 更生計劃案의 作成

1) 債務者 또는 管理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관찰기간동안 기업의 更生計劃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개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선임한 鑑定人的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개생계획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채무정리안을 債權者代表 및 受命法官에게 보고하고, 기업현황, 개생전망, 채무변제방법 및 고용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의견청취에 관한 직

무를 행한다(제143조, 제20조제3항 및 제25조)

2)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企業買受의 請約은 법원서기국에 제출되고 그 법원서기국은 이를 수명법관·채무자 및 채권자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44조, 제21조 및 제82조).

3)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債務者는 기업의 企劃案을 법원서기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受命法官은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원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145조).

4) 법원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직권으로 또는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대표, 검사인,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讓渡를 명하거나 清算節次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제146조 및 제36조).

4. 更生計劃의 履行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執行人은 企劃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를 보조한다(제147조).

第4章 清算節次

I. 概要

1. 先更生 後清算의 原則

프랑스의 통상적인 도산절차는 우선 更生을 原則으로 하여 절차를 개시하여 觀察期間 동안 간생의 가능성여부를 검토해 보고, 간생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清算節次로 이행시키는 一元的 節次를 취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생의 명백하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찰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청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청산절차에서는 清算人이 주체가 되어 법원의 감독하에 換價·配當을 진행한다.

2. 清算人の 選任 및 任務·權限

1) 청산인은 清算人名簿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법원이 선임한다(도산절차 관계인법 제20조제1항 참조). 기업주의 존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법인인 채무자의 경영자의 존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제149조).

2) 청산인은 적어도 3월에 한 번씩 受命法官과 檢事에게 그 활동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50조). 청산인은 그 직무수행중에 수령한 모든 금전을 즉시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하고, 공탁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공탁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5%의 법정이자를 부담한다(제151조).

3)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債務者는 그 결정일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자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박탈되고, 그 권한은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清算인이 이를 행사한다(제152조). 청산인은 수명법관으로부터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고, 이 법에서 管理人 또는 債權者代表에게 주어진 해당 직무·권한을 행사한다(제153-2조 참조).

3. 營業活動 기타 貸貸借契約의 繼續 여부

1) 公益 또는 債權者の 利益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국참사원의 명령에

서 정하는 기간범위내에서 營業活動의 繼續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자산의 관리 및 해고 등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管理人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 清算인이 이를 행한다(제153조).

2) 영업활동에 제공되는 不動產의 貸貸借契約은 청산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법률상 당연히 해지되지 아니한다. 청산인 또는 관리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임대차관계를 계속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제153-3조).

4. 滿期未到來債權의 取扱

청산절차개시가 결정되는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이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통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은 결정일의 환율에 의하여 그 곳의 통화로 환산한다(제160조).

II. 清算節次開始의 決定

1. 觀察期間 중에 開始되는 경우

1)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觀察期間이 시작되고 관찰기간의 종료전에 법원은 기업의 계속 또는 양도에 관한 更生計劃을 인가하거나 清算節次의 개시를 결정하여야 한다(제8조).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대표, 검사인 및 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식절차에 따라 이들을 소환한 후 管理人の 報告書를 심사하여 갱생계획을 인가하거나 清算節次의 개시를 결정한다(제61조제2항).

2)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자격이 있는 債權者代表를 清算人으로 선임한다. 이러한 청산인은 필요한 경우 채권조사 및 채권순위를 확정하는 심사가 행해지는 기간동안 청산업무를 집행하고, 청산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한다(제148-4조).

2. 觀察期間 없이 開始되는 경우

1) 청산절차는 支給停止의 상태에 있는 기업으로서 그 영업활동이 정지되거나

경쟁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 판찰기간없이 개시될 수 있다(제148조).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受命法官을 지명하고 清算人을 선임한다(제148-1조).

2)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채권자는 청산인에게 그 債權을 申告하여야 하고(제50조 내지 제54조 참조), 청산인은 채권의 조사가 행해지는 기간동안 청산활동을 진행한다(제148-2조 및 제148-3조).

III. 換價

1. 不動產의 賣却

1) 부동산의 매각은 不動產의 押留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검사인, 채무자 및 청산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들을 정식절차에 따라 소환한 후 賣却의 가격 및 조건을 정하고 公示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수명법관은 부동산 기타 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우호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입찰,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명할 수 있다(154조제1항 내지 제3항).

- 2) 청산인은 채권의 순위에 따라 그 賣却代金을 配當한다(제154조제5항).
- 3) 농업자의 청산절차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족상황을 고려하여 주된 거주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제154조제6항).

2. 一括讓渡

1) 동산 또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生產施設의 集合體는 이를一括讓渡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청산인은 이러한 일괄양도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유인하고 그 청약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 법인인 채무자의 법률상·사실상 경영자 또는 이들의 2촌이내의 존속 또는 배우자는 양수인이 될 수 없다(제155조제1항 내지 제3항).

2) 수명법관은 채무자,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 검사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들을 정식으로 소환한 후, 가장 성실하다고 판단되

고 雇傭 및 債務辨濟의 지속적인 보장에 관하여 최선의 조건을 제공하는 請約을 승낙하여야 한다(제155조제5항).

3) 讓渡代金은 배당 및 우선적 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각각의 양도된 자산에 할당된다(제155조제7항).

3. 기타 資產의 賣却

수명법관은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절차에 따라 채무자를 소환하고 검사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入札·競賣 또는 隨意契約에 의하여 기업의 기타 자산의 매각을 명한다(제156조).

4. 清算人의 報告義務 및 管轄行政官廳의 先買權

청산인은 모든 매각을 행하기 전에 또는 채무자의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과체전에 이를 관할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행정관청은 先買權을 행사할 수 있다(제157조).

5. 集團的 仲裁 또는 和解

1) 청산인은 수명법관의 감독 및 채무자의 의견의 청취과정을 거쳐 집단적으로 채권자들과 관련된 不動產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仲裁하거나 和解를 진행할 수 있다(제158조제1항).

2) 이 경우 중재 또는 화해의 목적물이 불확정적인 가치를 갖거나 법원의 관할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중재 또는 화해는 당해 法院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제158조제2항).

6. 換價와 관련한 個別的인 追及權의 行使

청산인이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일로부터 3월내에 擔保된 資產의 換價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우선적 권리,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와 우선적 권리를 가진 국고는 이들의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채권을 신고한 때로부터 個別的으로 追及權을 행사할 수 있다(제161조).

IV. 配當

1. 配當의 順位 및 範圍

1) 하나 또는 수개의 금액의 배당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보다 선행하는 경우에는 優先的 權利가 있는 債權者와 승인받은 抵當權者가 그들의 총채권의 비율로 배당에 참가한다. 부동산이 매각되고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자와 저당권이 있는 채권자간의 순위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중 당해 不動產의 賣却代金으로부터 그 채권의 전액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수령한 금액만큼을 공제한 후 배당을 수령한다. 여기에서 공제된 금액은 無擔保債權者에게 배당된다(제162조).

2)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에 부분적으로만 참가한 저당권있는 채권자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순위결정 이후에 잔존하는 금액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이전의 배당에서 기수령한 금액이 배당순위결정 이후에 계산된 배당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지급이 유보되어 있는 무담보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에 산입된다(제163조).

3) 우선적 권리 또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부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자는 그 잔액에 대하여 무담보채권자와 함께 배당에 참가한다(제163조).

4) 1) 내지 3)에서 기술한 저당권자에 관한 배당의 내용은 特定한 動產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도 적용된다(제164조).

2. 配當의 假支給

수명법관은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대표, 청산인, 집행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債權의 假支給을 명할 수 있다(제161-1조).

V. 清算節次의 終決

1. 清算節次 終決의 決定

법원은 집행가능한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산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충분한 금액을 확보한 경우 또는 적극자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산절

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를 정식으로 소환하고 수명법관의 보고에 의하여 清算節次의 終結을 결정할 수 있다(제167조).

2. 清算人의 執行計算書 作成義務

청산인은 집행에 관한 計算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계산서작성일로부터 5년동안 청산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그가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제168조).

3. 清算節次 終決의 決定 이후의 個別的 追及權의 回復

1) 原則 : 積極財產의 不足으로 인하여 청산절차 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회복되지 아니한다(제169조제1항).

2) 例外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산절차 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個別的인 追及權이 회복된다(제169조제1항 내지 제3항). 개별적인 추금권을 회복한 채권자는 법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소제기를 위한 債務名義를 받을 수 있다(제169조제4항).

- ① 당해 채권이 형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²⁹⁾ 및 당해 채권이 채권자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② 보증인 또는 공동채무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 ③ 채권자에 대한 사기, 간교한 행위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재재의 부과, 상사기업 또는 법인의 경영 또는 감독에 대한 방해, 고의적인 재정적 파탄 또는 채무자나 채무자가 경영하는 법인이 지급정지상태의 선고를 받거나 적극자산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절차가 종결된 경우

4. 清算節次의 繼行

積極재산의 不足으로 인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적극재산이 실현되지 아니

29) 이 경우 관련행위가 채무자의 職業상의 營業活動과 관련있는 것이었는지의 여부 및 租稅逋脫行爲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제169조제1항제1호).

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청산 절차는 모든 이해관계 있는 모든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유를 불인 법원의 결정으로 繢行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節次進行費用이 공탁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공탁된 비용은 절차의 속행으로 회수된 금액으로부터 이를 출자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환된다(제170조).

第5章 民事上·刑事上の 制裁

프랑스의 도산법은 여타의 나라들과 비교하여 개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個人 및 法人에 대하여 엄격한 民事상·刑事상의 制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經營者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I. 法人の 機關 또는 社員 및 經營者の 責任

1. 法人の 機關 또는 社員의 責任

법인의 개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은 그 법인의 기관 또는 사원으로서 회사채무에 대하여 無限·連帶의 責任을 지는 者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법원은 이들에 대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개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개시한다(제 178조).

2. 經營者の 不實經營에 대한 責任

법인의 개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積極財產의 不足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이러한 재산부족의 원인이 不實經營에 있는 때에는 법률상·사실상 및 유상·무상의 經營者 전원 또는 일부에게 법인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또는 연대없이 責任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제179조제1항). 또한 법원은 법인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의 책임이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영자에 대하여 개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제181조).³⁰⁾

30) 이러한 經營者の 責任과 후술하는 제185조 이하에서 정하는 '個人的 制裁'로 인하여,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支給停止로 보여지는 상태로 된다면 경영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곧 바로 更生節次를 신청한다고 한다. 小杉丈夫, "日本人からみたフランス倒産法の實務", 前掲論文, 25面.

3. 經營者의 기타 事由에 의한 責任

법인의 간생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恣意的인 法人資產의 處分 등의 경우 법률상·사실상 및 유상·무상의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경영자에 대하여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제182조제1항).³¹⁾ 이러한 사유로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채무에는 개인적인 채무 이외에 법인의 채무도 포함된다(제182조제2항).

II. 個人的 制裁 기타 能力制限

1. 個人的 制裁의 對象者

간생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個人的 制裁의 對象者는 상인·수공업자·농업자인 자연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률상·사실상의 경영자인 자연인 및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영자인 법인의 상임대표자인 자연인이다(제185조).

2. 要件

(1) 商人·手工業者·農業者인 自然人은 ① 지급정지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적자경영을 부당하게 계속한 경우, ② 법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의 작성을 하지 아니하

31) 不實經營(제179조) 이외에 법원이 경영자에 대하여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제182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1. 경영자가 법인의 자산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한 경우
2. 법인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한 경우
3. 법인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또는 당해 경영자가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법인이나 기업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산 또는 신용을 이용한 경우
4.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적자경영을 부당하게 계속한 경우
5. 법인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인의 계산서류를 인멸한 경우 또는 법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법인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령 또는 은닉하거나 법인의 채무를 부당하게 증가시킨 경우
7. 법규정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완전하거나 부정한 회계장부를 작성한 경우

거나 계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멸한 경우 또는 ③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령·은닉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위의 個人的 制裁를 받는다(제187조).

(2)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법원은 법률상·사실상, 무상·유상 여부를 불문하고 제182조에 정한 활동 중의 하나를 행한 法人の 經營者에 대하여 개인적인 제재를 선고할 수 있다(제188조, 제182조 참조).

(3)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법원은 제185조에 정한 모든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이유로 하여 개인적 제재를 선고할 수 있다(제189조).

① 법이 정하는 금지에 위반하여 상행위, 수공업, 농업 또는 법인의 지휘 또는 경영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를 회피 또는 지연시킬 목적으로 시가미만의 전매를 위한 매수를 행하거나 자산을 얻기 위하여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③ 기업 또는 법인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를 제3자를 위하여 대가없이 부담하는 경우

④ 지급정지 이후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무의 변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⑤ 15일의 기간내에 지급정지의 상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원은 그가 책임을 지게 된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제재를 선고할 수 있다(제190조).

3. 個人的 制裁의 申請

제187조 내지 제190조에서 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관리인, 채권자 대표, 청산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건을 담당한다(제191조).

4. 禁止對象業務

(1) 개인적 제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모든 상인기업, 수공업자기업, 농업기업 및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을 직접·간접으로 지휘, 경영, 관리 또는 감독하는 것이 금지된다(제186조).

(2) 제187조 내지 제19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적인 재재 대신에, 모든 상사기업, 수공업기업, 농업경영 및 하나 또는 수개의 법인을 저희, 경영, 관리 또는 감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제192조제1항). 또한 이러한 금지는 제185조에 정하는 자로서 惡意로 채권자대표에게 節次開始決定日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을 보충 또는 증명하는 증서나 채무금액을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선고될 수 있다(제192조제2항).

(3) 經營者의 議決權의 剝奪 또는 議決權·支分의 讓渡

개인적인 재재의 선고를 받거나 제192조에 정하는 금지를 선고받은 경영자의 의결권은 발생 또는 청산절차 중인 법인의 총회에서 당해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관리인, 청산인 또는 집행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이 선임한 수임인에 의하여 행사된다. 또한 위의 경영자 전원 또는 그들 중 일부에 대하여 의결권 또는 법인의 지분을 양도할 것을 명하거나 법인이 선임한 수임인의 처분에 의하여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받아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매각대금은 당해 채무가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게 된 경우 회사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 충당된다.

(4) 選舉職公務員의 就任 禁止(제194조)

개인적인 재재나 제192조에서 정하는 금지를 선고하는 결정은 선거직공무원에 의 취임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의 제한은 청산을 선고받은 모든 자연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능력제한은 관할행정관청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5. 個人的 制裁의 處分期限 및 制裁의 解除·復權

법원이 개인적인 재재 또는 제192조에 정하는 금지를 선고한 경우, 법원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의 기간을 정한다. 법원은 당해 결정의 가집행을 선고 할 수 있다. 失權, 權利行使禁止 및 選舉職公務員에의 就任能力制限은 정해진 기간의 경과로 법원의 별도의 결정없이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제195조제1항).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인한 선거직공무원에의 취임능력제한의 기간은 5년이다(제195조제2항).

債務의 消滅을 위한 종결의 결정은 기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자에게 모든 권리를 복권시킨다. 이러한 결정으로 그들에게 선고된 모든 실권, 금지 및 선거직공무원에의 취임능력제한은 免除 또는 解除된다(제195조제3항).

한편 利害關係人은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금액을 제공한 후 법원에 대하여 실권, 금지 및 능력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의 解除를 請求할 수 있다(제195조제4항). 실권, 금지 및 능력제한의 전부에 대한 해제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은 復權을 포함한다(제195조제5항).

III. 破産犯罪 기타 犯罪行爲

1. 破産犯罪行爲

(1) 破産犯罪의 適用對象

破産犯罪의 適用對象者는 모든 상인 · 수공업자 · 농업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사법인의 모든 임원 · 청산인 또는 이를 법인의 임원인 법인의 상설적인 대표자인 자연인이다(제196조).

(2) 成立要件(제197조)

개생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破産犯罪의 成立要件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생절차를 회피 또는 지연시킬 의도로 시가미만의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를 행하거나 자산을 얻기 위하여 파산을 초래하는 막대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 ② 채무자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령 또는 은닉하는 경우
- ③ 부당하게 채무자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우
- ④ 기업 또는 법인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계산서류를 인멸하는 경우 또는 법이 그 의무로 정하는 회계장부의 작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법 규정의 측면에서 명백하게 불완전하고 부정한 회계장부를 작성한 경우

(3) 處罰의 內容

파산범죄는 5년의 懲役 및 500,000프랑의 罰金에 처한다. 파산범죄의 共犯도 같은 형에 처한다(제198조). 이 경우 공범이 상인, 농업자 또는 수공업자가 아니거나 경제활동의 영위하는 사법인을 직접 · 간접으로, 법률상 · 사실상으로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파산범죄의 主犯 또는 共犯이 上場會社인 경우에는, 7년의 징역 및 700,000프랑의 별금에 처한다(제199조). 또한 제198조 및 제199조에서 정하는 형에 처해지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資格停止를 병과한다(제

200조).³²⁾

(4) 個人的 制裁와의 關係(제201조)

- ① 파산범죄를 범한 제196조에서 정하는 자를 심리하는 刑事裁判部는 그 자에 대하여 個人的 制裁의 선고 또는 제192조에서 정하는 禁止에 처하는 선고를 할 수 있다.
- ② 형사재판부 및 민사·상사재판부가 종국결정에 의하여 같은 자에 대하여 각각 個人的 制裁 또는 제192조에서 정하는 禁止에 처하는 선고를 행한 경우에는 형사재판부의 처분만이 집행된다.

(5) 法人에 대한 處罰(제202조)

- ①法人은 형법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제198조 및 제19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刑事處罰의 對象이 된다.
- ② 법인에게 과하는 刑罰은 다음 각호와 같다.
 - i. 형법 제131-38조에 정하는 방식에 따르는 별금
 - ii. 형법 제131-39조에 정하는 처벌
- ③ 형법 제131-39조제2호에서 정하는 재재는 범죄가 행하여진 당해 영업활동에서의 행위 또는 당해 영업활동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2. 기타 犯罪行爲

(1) 一般的 事項

- ① 다음과 같은 자는 3월이상 2년이하의 懲役 및 10,000프랑이상 200,000프랑이하의 罰金 또는 이 두가지 형 중의 하나의 형에 처한다(제203조).
 - i. 상인, 수공업자, 농업자 또는 법인의 경영자(사실상·법률상, 유상·무상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유예기간동안 저당권설정계약이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

32) 이러한 禁止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00조제1호 내지 제4호).

1. 형법 제131-26조에 따른 공민권, 민사권 및 가족권의 행사금지
2. 5년 이하의 기간동안 공직취임금지 및 파산범죄를 행한 영업활동분야에서의 직업적 영업 또는 회사에 의한 영업활동금지
3. 5년 이하의 기간동안 공공계약에의 참가금지
4. 5년 이하의 기간동안 수표의 발행 금지. 단, 발행인에게 지급인으로부터의 자산의 회수가 허용된 수표 또는 보증수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거나 제33조에서 정하는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행하거나 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자

- ii. 상인, 수공업자, 농업자 또는 법인의 경영자(사실상·법률상, 유상·무상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기업계속계획에서 정하는 부채의 결제방식에 위반하여 변제를 행하거나 제70조에서 정하는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한 자
- iii. 유예기간 또는 기업계속계획의 집행기간동안 채무자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채무자와 i 및 ii에서 기술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부당한 지급을 수령한 자

② 다음과 같은 자는 제198조 내지 제200조에서 정하는 형에 처한다(제204조).

- i. 제196조에서 정하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동산,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취 또는 은닉하는 자. 이 경우 형법 제121-7조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ii. 객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에서 자기의 명의로 또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채권을 신고한 자
 - iii. 타인의 명의 또는 가공의 명의로 상행위, 수공업행위, 농업행위를 영위하는 자로서 제209조에서 정하는 행위 중 하나의 범죄를 행한 자
- ③ 제196조에 정하는 자의 배우자, 비속, 존속, 방계친족 또는 인척으로서 객생 절차중가 진행중인 채무자의 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을 횡령, 유용 또는 은닉한 자는 형법 제341-1조에서 정하는 형에 처한다(제205조).

(2) 法院의 處分(제206조)

제203조 내지 제205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受訴法院은 無罪判決이 있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부당하게 사취되었던 모든 자산·권리의 返還 또는 청구가 있는 경우 損害賠償을 선고하여야 한다.

(3) 倒產節次關係人の 犯罪行爲(제207조)

① 管理人, 債權者代表, 清算人 또는 執行人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刑法 제314-2조에 정하는 형에 처한다.

- i. 고의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이 경우 자신의 직무수행중에 수령한 금액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이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이건 불문한다.

ii.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이익에 반함을 알면서 자신의 처분권한을 이용하는 행위

- ② 관리인, 채권자대표, 청산인, 집행인 또는 절차에 어떠한 자격으로든 참여한 기타의 자로서 직접·간접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단, 검사인 및 종업원 대표는 예외로 한다. 수소법원은 이러한 취득의 무효를 선고하고 청구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명한다.

(4) 契約의 效果

- ① 객생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결정 이후에 債務者의 負擔이 되는 特別利益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형법 제314-1조에 정하는 형에 처하고 수소법원은 이러한 契約의 無效를 선고한다(제208조).
- ② 제196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자로서 객생절차 또는 청산절차 개시결정의 대상이 된 법인의 소송에 있어서 또는 법인의 사원총회 또는 채권자집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악의로 횡령 또는 은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거나 부담하지도 아니한 채무를 부당하게 확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198조 내지 제200조에서 정하는 형에 처한다.

第6章 프랑스 倒産法制度의 示唆點

I. 倒産節次의 一元化

프랑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도산절차를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도산절차는 破産節次를 표준적 도산절차로 하여 일단 파산절차를 신청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更生節次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하여, 프랑스의 도산절차는 更生節次를 표준적 도산절차로 하여 우선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간생절차를 개시하고 도중에 간생불능으로 판명된 것을 清算節次로 이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³³⁾ 프랑스가 이처럼 극단적인 更生優先主義를 취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도산법이 企業의 維持를 통한 雇傭確保와 失業防止를 위하여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을 가능한 한 간생시키도록 한다는 정책에 기초하여 입법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倒産法의 單一法化와 함께 倒産節次의 一元化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標準的 倒産節次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독일의 입법례에 더하여 프랑스의 입법례도 도산절차 일원화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倒産防止節次

프랑스 도산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서 '和解에 의한 整理節次'와 '警告節次' 및 '特別管理人에 의한 整理節次' 등 倒産防止節次를 들 수 있다. 이들 절차는 商事法院長의 주도하에 도산의 우려가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거나 재건안을 작성시킴으로써 도산의 방지를 피하는 非公開的인 節차이다. 그리고 이들 절차가 기업으로 하여금 상황을 치유하게 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은 倒産節次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도산예방절차는 프랑스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는 프랑스 도산절차의 특유한 여건 즉, 商事法院에의 기업

33) EU 15개 회원국의 도산법제도를 비교하면, 기업도산문제를 市場經濟原理에 맡겨 해결하려는 입법례와 國家의介入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입법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이다, 山本 和彦, 前揭論文, 25面 이하.

정보의 집중과 이에 기초한 상사법원의 폭넓은 재량권 행사 그리고 도산방지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변호사 이외의 여러 전문직의 존재라고 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도산의 처리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和議節次의 改善이나 任意整理와 倒産節次의 連續性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도산방지절차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III. 倒産節次中 和解의 활용

프랑스의 도산절차에서는 清算節次는 물론 更生節次에서도 和解가 빈번하게 이용된다. 먼저 청산절차의 경우를 보면, 清算人은 수명법관의 감독하에 채무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화해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해는 상사법원의 승인을 받고 불복신청기간을 경과하면 大勢的 效力を 가진다. 다음으로 개생절차에 있어서도 관찰기간중에 管理人은 종종 채권자와 화해를 진행하는데, 관리인은 관찰절차를 진행하면서 개생계획안을 작성할 때까지 화해에 의하여 채권자의 수를 줄인다. 즉, 프랑스의 개생절차에서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개생에 유용한 채권자만을 위하여 개생계획안을 작성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사전에 화해를 통하여 개생절차로부터 배제시키고 있다. 다만, 개생절차에서는 청산절차와는 달리 화해의 대세적 효력은 없고 受命法官에 의한 화해의 許可라고 하는 형태로 처리된다.

우리의 도산절차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파산자의 신청에 의한 強制和議 정도를 들 수 있다. 파산, 회사정리, 화의 등의 硬性的 倒産節次 이외에 軟性的 倒産節次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프랑스의 도산절차 중 광범위한 화해의 활용은 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經營者의 責任 추궁

프랑스 도산법은 채무자의 법률상 · 사실상 및 유상 · 무상의 經營者에 대하여 倒産犯罪에 대한 刑事的인 制裁와는 별개로 民事的인 制裁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즉, 프랑스 도산법은 채무자의 경영자에 대하여 기업이 支給停止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경영을 계속하여 積極財產의 不足을 증대시키고 도산한 경우 그 부족분을 개인적으로 전보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80조). 또한 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³⁴⁾ 도산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경영자에게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을 직접·간접으로 지휘·경영·관리 또는 감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個人的 制裁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2조 및 제188조).

우리의 도산법에서도 理事 등 經營者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詐欺 또는 贈受賂와 관련한 倒産犯罪에 대한 刑事的인 制裁에 치중하고 있고 民事的 制裁에 관하여는 거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현행법규정은 적절한 시기에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理事 등의 責任經營을 강화하고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으로 하여금 適切한 時機에 도산절차에 들어오도록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책임을 업격하게 묻고 있는 프랑스 도산법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簡易更生節次

프랑스 도산법상은 간생절차로서 정식의 간생절차 이외에 從業員의 數 또는 賣出額이 일정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簡易更生節次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간이간생절차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管理人이 선임되고, 통상의 경우라면 관찰기간, 간생계획안의 작성 및 간생계획의 실행이 법원의 감독하에 감정인 또는 집행인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債務者에 의하여 진행된다.

34) 여기에서 一定한 要件에 해당하는 경우란 ① 경영자가 법인의 자산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한 경우, ② 법인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한 경우, ③ 법인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또는 당해 경영자가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법인이나 기업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산 또는 신용을 이용한 경우, ④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지급 정지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적자경영을 부당하게 계속한 경우, ⑤ 법인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인의 계산서류를 인멸한 경우 또는 법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⑥ 법인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령 또는 은닉하거나 법인의 재무를 부당하게 증가시킨 경우 또는 ⑦ 법규정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완전하거나 부정한 회계장부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제185조 참조).

第1部 프랑스의 倒産法制度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업의 규모가 적고 채권자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中小企業의 경우 간이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객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관한 制度的 裝置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객생절차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簡易更生節次를 하나의 모델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第2部

프랑스 倒產法 原文翻譯

企業의司法的更生및清算에관한法律

(LOI n. 85-98 relative aux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 des entreprises)

目 次

第1編 更生節次에 관한 總則	81
第1章 觀察節次	81
第1節 節次의 開始	81
第1款 申請 및 決定	81
第2款 更生節次의 機關	83
第3款 特別한 경우	85
第2節 貸借對照表, 社會貸借對照表 및 更生計劃案의 작성	85
第3節 觀察期間 중의 企業	88
第1款 保全措置	88
第2款 企業의 經營	89
I. 企業의 業務執行	89
II. 營業活動의 繼續	91
第3款 雇傭現況	94
第4款 債權者現況	95
I. 債權者代表	95
II. 個別的 訴訟上 請求의 中止	95
III. 債權申告	95
IV. 利子計算의 停止와 期限의 利益의 維持	97
V. 登記能力의 制限	97
VI. 保證人과 共同債務者	98
第2章 企業의 繼續 또는 讓渡에 관한 更生計劃	98
第1節 更生計劃의 認可	98
第2節 企業의 繼續	100

第1款 法人の 定款의 變更	101
第2款 債務의 辨濟方法	101
第3節 企業의 讓渡	103
第1款 通 則	103
第2款 企業讓渡의 方法	104
第3款 讓受人の 義務	105
第4款 債權者에 대한 效果	106
第5款 營業의 貸貸借	107
第3章 企業의 資產	108
第1節 債權의 調査 및 確定	108
第2節 일정한 行爲의 取消	109
第3節 配偶者の 権利	110
第4節 動産賣渡人の 権利와 所有權에 기초한 返還請求	110
第4章 履傭契約에서 발생하는 債權에 대한 辨濟	112
第1節 債權의 調査	112
第2節 勤勞者の 優先的 権利	113
第3節 勤勞契約에서 발생한 債權의 支給을 위한 擔保	114
 第2編 일정한 企業에 적용되는 簡易節次	114
第1章 開始決定과 觀察期間	114
第2章 企業의 更生計劃案의 作成	115
第3章 更生計劃案의 履行	116
 第3編 清算節次	116
第1章 清算節次開始의 決定	116
第1節 觀察期間 없이 開始되는 清算節次	116
第2節 觀察期間 중에 開始되는 清算節次	117
第3節 通 則	118
第2章 換 價	120

第3章 債權의 調査	122
第1節 債權의 辨濟	122
第1款 個別의인 追及權	122
第2款 配當	123
第2節 清算節次의 終決	123
第4編 抗告	125
第5編 法人 및 그 經營者에 관한 特別規定	126
第6編 個個人的 制裁 기타 能力制限	128
第7編 破産犯罪 기타 犯罪	131
第1章 破産犯罪	131
第2章 기타 犯罪	132
第3章 節次規定	134
第8編 雜則	135

제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11조로 개정) ①기업의 사법적 갱생(이하 '갱생절차'라 한다)은 기업의 보호, 영업활동과 고용관계의 유지 및 채무의 변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갱생절차는 관찰기간(période d'observation)의 종료시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갱생계획에 따라 행하여진다. 갱생계획은 기업의 계속 또는 양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③기업이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그 갱생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찰기간의 개시없이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12조로 개정) ①갱생절차 및 사법적 청산(이하 '청산절차'라 한다)은 모든 상인, 수공업자, 농업자 및 私法人에게 적용한다.

②50인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세후매출액이 국참사원(Conseil d'Etat)의 명령이 정하는 일정액에 달하지 못하는 자는 이 법 제2편에서 정하는 간이갱생절차(procédure simplifiée)의 적용대상이 된다.

第1編 更生節次에 관한 總則

第1章 觀察節次

第1節 節次의 開始

第1款 申請 및 決定

제3조 ①갱생절차는 처분가능한 자산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이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갱생절차가 개시되려면 제1항에서 정하는 지급정지후 15일내에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4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II조 및 1990. 1. 23. 법률 제90-35호로 개정) ①갱생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도 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권의 성질은 불문한다. 그러나 상사회사(société commerciale)의 형태가 아닌 농업자에 대하여는 농업자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의 적용에 관한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3조가 적용되어 조정인(conciliateur)의

선임청구에 의하여 대심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갱생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또한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③기업위원회(comité d'entreprise)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délégué du personnel)는 법원장 또는 검사에게 기업의 지급정지상태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를 고지할 수 있다.

제5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III조 및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13조로 개정) 1984. 3. 1. 법률 제84-148호 제37조 또는 농업자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의 적응에 관한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7조(농촌법 제351-6조 참조)에 의하여 체결된 화의계약(accord amiable)에서 정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갱생절차는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검사·채무자 또는 화의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화의계약의 해제를 선고한다. 채권자는 그 채권 및 담보채권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채권액으로 회복한다.

제6조 ①법원은 채무자와 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들을 평의회(chambre du conseil)에 정식으로 소환한 후 절차의 개시를 결정한다.

②또한 법원은 의견의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의 의견이라도 청취할 수 있다.

③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화의계약의 체결에 참여한 조정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정인을 정식으로 소환한 후 절차의 개시를 결정을 한다.

제7조 ①채무자가 상인 또는 수공업자인 경우에는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이 관할법원이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개시된 절차가 당사자 외의 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최초의 수소법원이 그 관할을 유지한다.

②각 지방에서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갱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및 당해 법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의 명령으로 정한다.

③(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14조로 개정) 당사자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법원의 법원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사

건을 관할지역내의 같은 성질의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동일한 요건하에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다른 항소법원의 관할지역의 법원에 사건을 이송 할 수 있다.

제8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1-I조로 개정) ①생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대차대조표와 사회대차대조표의 작성 및 기업의 계속 또는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생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관찰기간이 개시된다.

②관찰기간은 국참사원의 명령에 따라 정한다. 이 기간은 1회에 한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채무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신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국참사원의 명령이 정하는 기간만큼 관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정해진 관찰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생생계획의 인가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①법원은 지급정지가 발생한 경우 그 일자를 결정한다. 그 일자의 결정이 없는 경우, 지급정지는 이를 확인하는 결정이 있는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지급정지는 1회 또는 수회 공표될 수도 있으나, 최초의 지급정지의 발생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생생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administrateur), 채권자대표, 청산인(liquidateur)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정지일을 결정한다. 일자의 수정을 위한 청구는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일, 제14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생생계획안의 제출일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제103조에서 정한 채권표의 제출일로부터 15일내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第2款 更生節次의 機關

제10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16-I조, 제16-II조, 제17-I조로 개정) ①법원은 절차의 개시를 결정함에 있어 수명법관(juge commissaire)과 2인의 도산절차관계인(mandataire de justice)을 선임한다. 도산절차관계인 중 1인은 관리인이고 1인은 채권자대표이다. 법원은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 종업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내부에서 종업원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종업원들은 1회의 단기비밀투표에 의하여 그 대표를 선출한다.

②관리인은 1인 또는 수인의 감정인(expert)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채무자의 존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업주 또는 경영자의 존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본조에서 정하는 직을 맡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이 종업원대표의 선임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종업원대표가 선임되지 못한 경우 기업주는 의무해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기업위원회 또는 종업원대표는 제1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①선거법(Code électoral)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종업원대표로 선임되거나 그 선임에 참여할 수 없다. 종업원대표는 만 18세이상이어야 한다.

②종업원대표의 선임에 관한 이의는 이를 선고한 소심법원(tribunal d'instance)의 상급심에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18-II조로 개정) 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수명법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감정인 또는 채권자대표를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은 동일한 요건하에 이미 선임된 관리인 이외에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을 추가할 수도 있다.

②관리인·채권자대표 또는 검사인은 수명법관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동일한 요건하에 관리인 또는 감정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의 개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①관리인 및 채권자대표는 수명법관과 검사에게 절차의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명법관과 검사는 언제든지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와 서류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수명법관의 청구에 의하여 자신이 입수한 정보 중 절차에 유용한 모든 것을 수명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명법관은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소송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19조로 개정) ①수명법관은 신청한 채권자 중에서 1인 내지 5인의 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수인의 검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수명법관은 이들 중 적어도 1인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중에서, 그 외 1인은 담보권 없는 일반채권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채무자의 존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채무자가 법인인 기업주 또는 경영자의 존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검사인 또는 검사인으로 지정된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없다.

③검사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채권자대표와 기업의 관리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명법관을 보조한다. 검사인은 관리인이나 채권자대표에게 제출된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검사인은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26-1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형벌이 과해진다.

④검사인은 무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검사인은 그 대리인 중 1인 또는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검사인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第3款 特別한 경우

제16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IV조로 개정) ①법원은 상인, 수공업자 또는 농업자가 지급정지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내에 상속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담당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알고 있는 상속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 ①법원은 채무자의 지급정지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1. 상업등기 및 회사등기의 말소. 법인의 경우 그 기간은 청산종결의 공고에 이은 등기의 말소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수공업자인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

3. 청산종결의 등록(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

②법인의 구성원 또는 사원으로서 회사채무에 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갚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개시하려면, 지급정지가 등기말소전에 있는 경우 상업등기소에서의 등기말소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사건에 관여한다.

第2節 貸借對照表, 社會貸借對照表 및 更生計劃案의 작성

제18조 ①관리인은 채무자와 필요한 경우 1인 또는 수인의 감정인의 협조하에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사회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관리인은 이들 대차대

조표 등을 고려하여 관리인은 갱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제안한다.

② 대차대조표 등에는 기업이 직면한 파탄상태의 원인, 정도 및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갱생계획안에서는 갱생가능성, 영업활동방식, 시장현황, 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갱생의 전망을 평가한다.

④ 갱생계획안에는 채무변제방법과 기업주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변제방법을 정한다.

⑤ 갱생계획안에는 영업활동의 계속을 위하여 기업에 필요한 고용의 수준과 조건을 기술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갱생계획안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해고가 예정된 종업원의 복직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명법관은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회계감사원(commissaire aux comptes)·종업원대표·행정관청·공공기관·공제기관·사회보장기관·신용평가기관, 금융위험과 지급사고를 담당하는 기관 등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IV조로 개정) ① 관리인은 수명법관으로부터 그 직무 및 감정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갱생절차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 경우 감정인은 1984. 3. 1. 법률 제84-148호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고서를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채무자 및 채권자대표를 비롯하여 기업현황, 갱생전망, 채무변제방법 및 영업활동의 계속과 관련한 고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업무의 진행상황을 채무자, 채권자대표 및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입수된 정보 및 채무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들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2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1조로 개정) ① 갱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자는 관리인에게 본편 제2장에서 정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계속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청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약은 관리인이 보고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없다. 청약을 한 자는 법원의 개생계획인가의 결정시까지 당해 청약에 의하여 구속된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보고서 제출후 1월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을 한 자는 상소의 경우 이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청약은 이를 검토한 관리인의 보고서에 첨부된다.

④개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경영자 및 법인의 경영자나 자연인인 채무자의 존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청약을 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농업자인 경우 법원은 친족에 관한 본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2조 ①관리인이 법원에 자본의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계속의 개생계획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에게 그 사안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소집은 국참사원의 명령에서 정하는 형식과 기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계산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손실로 인하여 순자산이 회사자본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먼저 개생계획안에서 제안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자본을 구성하기 위한 사원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관리인이 제안한 금액은 회사자본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개생계획에 참여하는 1인 또는 수인에 관한 자본의 감소와 증가를 위해서도 사원총회가 소집될 수 있다.

③주주, 사원 또는 신주인수인의 납입약정은 법원의 개생계획인가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동의조항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①법원은 기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경영자의 개임을 조건으로 하여 개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요건하에 법률상·사실상 및 유상·무상의 여부를 불문하고, 1인 또는 수인의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또는 의결권증서의 양도를 금지하고 의결권증서에 부착된 의결권을 법원이 지정한 기간동안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선임된 청산인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를 명하고 감정인이 그 양도가액을 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본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영자 및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

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4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2-I조로 개정) ①채무변제계획은 수명법관의 감독하에 관리인이 작성하여 채권자대표, 검사인 및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대표는 제50조이하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유예조건 등에 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면에 의한 물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당해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노동법 제143-1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이 이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그 채권이 아직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조세채권 또는 사회보장기관 및 사회보장법 제4편에서 정하는 기관들의 채권에 관하여는 국참사원의 명령에서 정하는 요건하에 기간유예가 합의될 수 있다. 우선적 권리의 순위 및 저당권의 양도 또는 담보권의 포기에 관하여도 그러하다.

④채권자대표는 채권자가 행하는 승인을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는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관리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5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2-I조로 개정) ①채무자,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 검사인 및 채권자대표는 관리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고는 동시에 노동법상의 관할행정관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인은 일정에 따라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법원 및 노동법상 관할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관리인에게 요청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第3節 觀察期間중의 企業

第1款 保全措置

제26조 ①관리인은 직무가 개시되면 기업주에게 채무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의 보존 및 기업의 생산능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기업주가 취득 또는 생신을 해태한 모든 저당권, 질권 기타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기업의 명의로 이를 등록할 권한이 있다.

제27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3조로 개정) ① 절차의 개시로 기업의 자산에 대한 조사절차가 행하여진다.

② 자산의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소유권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수행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제28조 ① 간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경영자는 그 법률상·사실상의 지위 및 유급·무급 여하를 불문하고 법원이 정하는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지분, 주식, 사채 또는 당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는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② 제1항의 주식·사채·의결권증서 등은 관리인이 그 명의인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경우에 따라 회사 또는 금융중개인이 관리하는 특별계좌로 집중되어 그 양도 행위의 제한을 받는다. 당해 계좌에 관한 어떠한 이체도 수명법관의 허가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9조 ① 수명법관은 관찰기간동안 채무자를 수신인으로 하는 서신을 관리인에게 전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별도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서신의 개봉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은 개인적 성격을 갖는 모든 서신은 채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 ① 수명법관은 법인의 기업주 또는 경영자의 직무에 관하여 지급할 보수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보수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기업의 자산으로부터 수명법관이 정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第2款 企業의 經營

I. 企業의 業務執行

제31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 이외의 관리인의 임무는 법원이 정한다.

② 법원은 관리인의 전원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명할 수 있다.

1. 경영활동의 감독
2. 경영에 관한 모든 행위 또는 일부 행위에 관하여 채무자를 보조하는 것
3. 단독으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는 것

③ 관리인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주와 동일한 법률상·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 자신, 채권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의 임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수표법에 의하여 통합된 1935. 10. 30. 명령 제65-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자신의 서명으로 채무자명의의 은행계정 또는 우편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 ①채무자는 자산의 처분행위, 관리행위 및 관리인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판상·재판외의 권한을 계속 행사한다.

②채무자가 단독으로 행한 일상적인 업무집행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3조 및 제37조이하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4조로 개정) ①생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당해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의 지급은 법률상 당연히 금지된다.

②수명법관은 기업주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기업의 계속을 위한 처분, 담보권의 승인, 중재계약의 체결, 화해계약의 체결 등의 행위를 명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은 영업활동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주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담보물의 반환을 위한 개시결정 이전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명할 수 있다.

④본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 또는 지급은 당해 행위 또는 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당해 행위가 공고된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4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5조로 개정) ①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담보권있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내에 채권이 신고된 경우에는, 생생계획의 인가 또는 청산절차개시의 결정 이후 그들간의 우선순위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의 변제를 받는다.

②수명법관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지급(paiement provisionnel)을 명할 수 있다. 특별히 이유를 불인 수명법관의 결정으로써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가지급 또는 국고나 사회보장기관 등을 위한 가지급 등은 채권을 신고한 담보권자의 경우보다 후순위로 이행된다.

③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담보가치를 가지는 담보로 교체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교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명법관은 당해 담보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는 항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II. 營業活動의 繼續

제35조 기업의 영업활동은 관찰기간동안에도 계속된다. 다만, 이하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2-II조 및 제22-III조로 개정) 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 채권자대표, 검사인, 채무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명법관의 보고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명하거나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대표, 검사인 및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들을 정식절차에 의하여 소환한 후 제1항의 결정을 내린다.

③법원이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찰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관리인의 직무도 종료한다.

제37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6-I조로 개정) ①관리인만이 채무자의 계속적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속적 계약의 상대방이 관리인에게 그 이행여부를 최고한 후 1월내에 회답이 없으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수명법관은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리인에게 1월이하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부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인 경우 그 지급은 현금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계속적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정기간동안의 분할지급 또는 분할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관리인은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자산의 처분까지는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 또는 계속적 계약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관리인, 채권자대표 또는 검사인은 법원에 관찰기간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④계속적 계약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갱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은 채권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신고 이외에 이자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⑤(구법 제3항은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6-II조로 폐지)

⑥관리인이 계약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고 그 금액은 상대방의 채권으로 신고된다.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⑦다른 법령 또는 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갱생절차개시의 사실만으로 계약의 불가분성,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⑧본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7조로 개정) ①임대인은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차임의 불지급 및 당해 법원의 결정 이후 관리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해태를 이유로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상의 청구는 갱생절차의 개시결정후 2월 이내에는 제기하지 못한다.

②다른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기간동안 기업이 임차한 부동산의 하나 또는 수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제38-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8조로 개정) 임대차계약의 양도의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양수인과의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은 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9조 ①갱생절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절차의 개시결정전 최종 2년간의 차임에 대해서만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②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당해연도분의 차임, 임대차의 실행과 관련된 금액 및 법원이 임대인에게 할당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③임대차가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당시의 담보가 유지되고 있거나 절차개시의 결정시에 제공된 담보가 충분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수명법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에게 임차한 토지에 부착된 동산으로서 장래 노후화될 것, 급격한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것, 그 보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 또는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영업재산성(pexistence du fonds) 및 임대인을 위한 담보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9조로 개정) ①생생절차개시의 결정 이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영업활동이 계속되는 한 그 만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 전부의 양도, 청산 또는 영업활동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법 제143-10조, 제143-11조, 제742-6조 및 제751-1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에 우선하지는 아니한다.

②청산절차의 경우, 제1항의 채권은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법 제143-10조, 제143-11조, 제742-6조 및 제751-1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 소송비용, 유치권이 설정된 채권 또는 1951. 1. 18. 법률 제51-59호 공장저당법에 의한 특별한 부동산·동산담보가 설정된 채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급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한다.

1. 노동법 제143-11-1조 내지 제143-11-3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금채권
2. 소송비용

3. 채권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대부금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적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지급의 유예가 승인된 채권. 이러한 확정된 대부금 및 지급의 유예가 승인된 채권은 관찰기간동안 영업활동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명법관이 명하고 공고의 대상이 된다. 정기계약의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또는 위약금은 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4. 노동법 제143-1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금액

5. 기타 채권(각 채권의 순위에 의함)

제41조 ①관리인 또는 채권자대표가 수령한 금액으로서 채무자의 은행계정 또는 우편계정에 입금되지 아니한 것은 영업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즉시 공탁계정에 이체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이체가 지연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채권자대표는 이체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5%의 법정가산금과 동률의 이자를 부담한다.

제42조 ①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찰기간중에 영업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이에 반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업의 소멸이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최고 2년의 기간으로 체결한다. 이 경우 관찰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연장된다.

③ 영업자산 및 수공업자의 설비의 임대차에 관한 1956. 3. 20. 법률 제56-277호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① 관리인은 영업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임대인이 임대차의 요소를 해손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자신이 받은 담보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 채권자대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명할 수 있다.

第3款 雇傭現況

제44조 채권자대표는 근로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조사를 위하여 그 명세표를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종업원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세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대표는 관리인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수명법관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종업원대표는 노동법 제43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종업원대표가 수명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한 시간은 법률상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경우에 따라 기업주, 관리인 또는 청산인은 통상적인 기간의 범위내에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32조로 개정) 관찰기간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해고가 급박하고 절실하며 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러한 해고에 관하여 수명법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인은 수명법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노동법 제32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기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법 제321-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관할권있는 행정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수명법관에게 승인을 요청함에 있어 수집된 의견과 함께 손해배상책임 및 인력재배치에 관한 자료를 증거물로 첨부할 수 있다.

제45-1조 노동법 제143-11-1조 내지 제143-11-3조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동법 제143-1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협회가 지급한 금액은 그 자체로서 세무신고의 효과가 있다.

第4款 債權者現況

I. 債權者代表

- 제46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34조로 개정) ①검사인에게 인정된 권리와는 별개로 법원이 선임한 채권자대표만이 채권자들의 명의로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②채권자대표는 검사인이 행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게 제출된 관찰의 결과를 수명법관 및 검사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채권자대표가 수령한 금액은 채무자의 자산의 일부가 되고 기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결제를 위하여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충당된다.

II. 個別的訴訟上請求의 中止

제47조 ①생생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생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소송상의 청구가 중지된다.

1. 채무자의 일정금액의 지급

2. 일정금액의 지급해태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②또한 채권자에 의한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도 중지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제48조 진행중인 소송절차는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때까지 중단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노동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소송절차는 채권자대표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의 확인 및 그 금액의 결정만을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속행한다.

제49조 제4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송행위 및 집행절차 이외의 소송행위 및 집행 절차는 관찰기간중에 관리인 및 채권자대표의 참가신청 이후 또는 관리인 및 채권자대표의 자발적인 소송절차의 수계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된다.

III. 債權申告

제50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35-A조로 개정) ①생생절차개시의 결정이 공고되면 종업원을 제외한 생생절차개시의 결정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자는 채권자대표에게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된

담보권 있는 채권자나 공시된 리스계약의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는다.

② 채권의 신고는 채권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③ 채권의 신고는 그 채권이 증서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행하여져야 한다. 조세채권, 사회보장기관이 가지는 채권 및 노동법 제351-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채권으로서 그 신고시 집행명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채권은 신고된 금액만큼 임시명의(titre provisionnel)로 승인된다. 국고 및 사회보장기관의 채권은 반드시 신고되어야 한다. 다만, 국세 및 신고일에 증명되지 아니한 기타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진행중인 소송절차 또는 행정절차의 경우를 제외한 채권의 신고는 제10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증명되어야 한다.

④ 노동법 제143-1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에 선급으로 상환된 금액에 관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36조로 개정) ① 집행명의를 받은 경우 채권의 신고에는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일 당시의 채권액, 만기일 및 만기시의 채권액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에는 우선적 권리의 유무, 그 종류 및 채권에 부수하는 담보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채권의 경우 프랑화로의 환산은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일의 기준환율에 의한다.

③ 신고된 채권은 채권자가 그 진실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수명법관은 감사 또는 감사가 없는 경우 회계감정인(expert-comptable)에게 채권신고를 감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52조 채무자는 채권자대표에게 채권자들이 증명한 채권의 목록과 자신의 채무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37조로 개정) ① 국참사원의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환가 및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자신의 불신고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수명법관이 그 권리를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채권자는 당해 청구 이후에 행하여지는 배당에만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가 및 배당에의 참가의 배제는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50조제1항 제2문의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③권리회복의 청구는 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내 또는 노동법 제143-1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의 경우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이들 기관에 의하여 담보되는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제기할 수 있다. 권리회복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법원(cour d'appe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신고도 통지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채권은 소멸한다.

제54조 이 법 제106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 이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대표는 이해관계있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에 관하여 해명을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0일의 기간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 채권자대표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IV. 利子計算의 停止와 期限의 利益의 維持

제55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38조) ①법률상 · 계약상의 이자기간은 그 성질이 자연이자든 배상금이든 불문하고 발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인하여 정지한다. 다만, 1년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또는 1년이상의 분할지급을 수반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는 예외로 한다. 보증인과 공동채무자에 대하여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자연인인 보증인에 대한 모든 소송은 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 또는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 유예된다. 또한 법원은 2년의 범위내에서 보증인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③보증의 이익을 가진 채권자는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발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그 결정일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이 집행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조항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V. 登記能力의 制限

제57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39조로 개정) ①저당권, 질권 및 우선적 권리는 발생절차개시의 결정 이후에는 등기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발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에 등기되지 아니하고 결정일 이후에 징수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국세채권이 제50조에 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된 경우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③영업(fonds de commerce)의 매도인은 제1항의 규정의 예외로서 우선적 권리 를 등기할 수 있다.

VI. 保證人과 共同債務者

제58조 개생절차가 진행중인 2인 이상의 공동채무자가 서명 또는 연대보증한 지급 증서의 소지인인 채권자는 각 절차에 따라 그 증서의 액면가액대로 채권을 신고 할 수 있다.

제59조 이행된 지급과 관련한 다른 공동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쟁송절차는 개 생절차가 진행중인 공동채무자 상호간에는 개시될 수 없다. 다만, 각 절차에 의 하여 지급된 금액의 합계가 주된 채권과 부수적인 채권의 전액을 초과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은 지급채무의 순위에 따라 다른 공동 채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일부의 공동채무자들에게 귀속된다.

제60조 ①개생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명한 지급증서 의 소지인인 채권자 및 기타 공동채무자의 지급증서의 소지인인 채권자가 절차개 시의 결정 이전에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일부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 권자는 이러한 일부의 지급을 공제한 금액에 한해서만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②일부 지급을 행한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그가 채무자를 위하여 지급한 전 액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第2章 企業의 繼續 또는 讓渡에 관한 更生計劃

第1節 更生計劃의 認可

제6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22-IV조로 개정) ①법원은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대표, 검사인 및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 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식절차에 따라 이들을 소환한 후 관리인의 보고서를 심 사하여 개생계획의 인가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한다.

②개생계획은 기업의 계속, 양도 또는 부분적인 양도와 부분적인 계속의 결합의 3가지 중 하나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③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관한 개생계획은 일정기간동안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의 임대차계약

은 만기시의 양수도의 합의를 그 요건으로 한다.

- 제62조 ①생생계획에서는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가 지명되고 그가 기업의 생생에 필요한 계약의 총체인 생생계획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영업활동의 전망, 기업유지의 형태와 회계방식, 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변제 및 필요한 경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②생생계획에서는 고용의 수준과 전망 및 영업활동의 계속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생생계획을 집행하는 자는 사원들의 명의에 의하는 경우에도 생생계획안의 작성과정에서 그들이 서명한 지급계약 이외의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 제72조, 제86조, 제89조 및 제9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Ⅶ조) ①생생계획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해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법 제321-8조 및 제32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 및 관할행정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그 의견을 참고한 후가 아니면 법원은 이를 인가 할 수 없다.

②생생계획의 인가후 1월내에 행하여져야 하는 해고는 생생계획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동안 행하여지는 해고는 법률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인의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 한다.

제64조 ①생생계획에 대한 인가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과 공동채무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제65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40조로 개정) 제74조의 규정의 적용 과는 별도로, 생생계획의 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이 기간은 경우에 따라 제97조 이하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채무자가 농업자인 경우에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 ①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직무를 정하고 생생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②채권자대표는 채권의 조사에 필요한 기간동안 그 직무를 유지한다.

제67조 ①법원은 제6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생생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 집행인을 선임한다. 이 기간은 경우에 따라 제97조 이하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추가된다. 관리인 또는 채권자대표는 이러한 직무를 위하여 지명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생계계획의 인가결정 이전에 제기된 소송은 관리인이 제기한 것이든 채권자대표가 제기한 것이든 불문하고 집행인에 의하여 계속 유지된다.

③집행인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집행인은 생계계획의 미집행을 법원장과 검사에게 보고하고 기업위원회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①법원은 기업주의 청구에 의하고 집행인의 보고서를 참고하는 경우에만 생계계획의 목적 및 수단에 관한 중요한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식으로 소환한 후에 제1항의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41-I조로 개정)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계계획의 인가결정에서 정한 가격을 변경 할 수 없다.

第2節 企業의 繼續

제69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42조로 개정) ①법원은 관리인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상당한 정도의 생생의 가능성과 채무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계속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기업의 계속은 필요한 경우 기업의 일부에 대한 확대 또는 양도의 결정을 수반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한 기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82조 내지 제90조 및 제9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9-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43조로 개정) ①채무자가 수표법에 통합된 1935. 10. 30. 법령 제65-3조에 따라 수표발행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발행된 수표의 지급거절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각 경우에 따라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조치의 효력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은 법률상의 기간유예를 종료시킨다.

③생생계획에서 정한 형식과 기한의 준수는 제1항의 1935. 10. 30. 법령 제65-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제70조 ①법원은 생생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에서 기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대하여 기업이 정하는 기간동안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 공시의 개혁에 관한 1955. 1. 4. 명령 제55-22호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동산자산에 관하여는 국참사원의 명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법원서기국(greffé du tribunal)이 일정기간동안의 양도금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3년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당해 행위가 공고된 경우 그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기산한다.

第1款 法人の定款의 變更

제71조 생생계획은 기업의 계속에 필요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72조 법원은 생생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면서 관리인에게 국참사원의 명령에서 정하는 형식과 기한을 준수하여 생생계획에서 정한 변경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회의 소집을 명한다.

제7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44조로 개정) 사원 또는 주주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자신이 인수한 자본의 납입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시 이행하는 경우, 사원 또는 주주는 확정된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생생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의 감액 또는 변제기간의 유예에 따라 지분 또는 주식이 감소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第2款 債務의 辨濟方法

제74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45조 및 제46조로 개정) ①법원은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채권자들이 동의한 채무의 감액 또는 기간유예를 승인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완화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통된 지급기한을 과하지만,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경우 절차개시전에 당사자에 의한 우선적인 기간의 주장이 있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계획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1회의 지급은 1년의 기간 이후에 행하여질 수 없다.

③ 금융리스계약의 경우, 만기도록 전에 이용자가 선매권을 행사하면 그 기간이 종료한다. 기간의 연기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금액의 전액이 결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러한 선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75조 ① 생생계획은 채권자를 위하여 보다 짧은 공통된 기간내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감액된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생생계획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채권액의 감소는 확정된 조건에 따라 생생계획에서 정한 최종기일의 지급이후에 확정된다.

제76조 ① 다음의 채권들은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감액 또는 변제기간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노동법 제143-10조, 제143-11조, 제742-6조 및 제751-1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우선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

2. 민법 제2101조제4호 및 제2104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우선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금액이 노동법 제143-1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이 선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이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가장 후순위인 채권자들은 추산된 채무의 5%의 범위내에서 명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액이 적은 채권자부터 순서대로 채무의 감액 또는 변제기간의 유예없이 상환을 받는다. 이 조항은 1인이 보유하는 채권액이 위에서 정한 액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리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지급의 이행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 ① 생생계획에 채권을 기재하는 것과 채권자에 의한 채무감액 또는 기간유예의 동의가 당해 채권의 채무에의 종국적인 편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송상 다툼이 있는 채권은 당해 채권의 채무에의 종국적인 편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종국적인 편입 이전에 행해지는 배당에 임시로 참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47조로 개정) 법령 또는 계획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에 의하여 예정된 지급은 양도할 수 있다.

제78조 ①특별한 우선적 권리,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양도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나 일반적인 우선적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노동법 제143-10조, 제143-11조, 제742-6조 및 제751-1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우선적 권리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한 변제가 행해진 후에 그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자들은 그들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③자산이 우선적 권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다른 담보로 이를 대체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담보의 대체를 명할 수 있다.

제79조 자산의 일부양도의 경우 그 대금은 기업에 귀속된다. 다만, 제7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0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48조로 개정) ①채무자가 생생계획에 정하는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나 집행인의 청구에 의하여 생생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또한 법원은 집행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에 관한 소송을 담당할 수도 있다.

③이 경우 생생계획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및 담보채권의 총액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신고한다.

第3節 企業의 讓渡

第1款 通 則

제81조 ①법원은 관리인의 보고를 참고하여 기업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②기업양도는 독자적인 경영의 가능성이 있는 영업활동 및 이에 부수하는 고용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지를 보장하고 채무를 변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양도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일부양도는 그 자체로서 영업활동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부서 중 하나 또는 수개의 영업요소의 총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49-I조로 개정) 기업계속의 계획이 없는 경우 양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산은 매각되고 채무자의 재판상·재판외의 권리는 제3편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집행인에 의하여 집행된다.

第2款 企業讓渡의 方法

제82조 ①기업양도는 제8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 또는 수개의 영업 요소의 총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명하여질 수 있다.

②법원은 이러한 영업요소의 총체의 구성내용을 정한다.

③(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VII조로 개정) 제1항의 총체가 실질적으로 농경지의 임차차에 관한 권리로 구성된 경우, 법원은 임대인 또는 그 배우자나 비속 중 1인에게 그 경작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점유를 회복할 것을 명하거나 임대인이 추천하는 다른 임차인 또는 이러한 추천이 없는 경우 제83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청약을 한 전차인에게 임차권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수개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농촌법 제188-3 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어느 경우라도 농업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50조로 개정) ①모든 청약은 관리인이 채권자대표 및 검사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으로서 관리인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검사인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인이 그 청약을 수령한 후 청문(법원은 청문이 행해지는 동안 이러한 청약을 심사한다)이 있기까지 최소한 15일의 기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모든 청약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영업활동과 재무상황에 관한 상세한 내용
2. 양도가격 및 대금지급의 형식
3. 양도일
4. 당해 양도와 관련한 고용의 정도 및 전망
5. 청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담보
6. 양도후 2년간의 자산의 양도계획

②수명법관은 보충적인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인은 제1항에서 정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수령한 청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51조로 개정) 관리인은 법원에 청약의 본질 및 청약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5조 법원은 양도되는 총체에 부수되는 고용관계 및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최선

의 조건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청약을 승락한다.

제86조 ①법원은 관리인에 의하여 양도되는 계속적 계약의 이행을 참고하여 영업 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리스계약, 임대차계약, 자산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결정 한다.

②생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은 계약의 양도를 포함한다. 당해 양도가 제94조에서 정하는 영업의 임대차보다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③이러한 계약은 다른 규정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절차개시일 현재의 조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영업활동의 계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의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52조로 개정) 리스계약의 양도의 경우, 만기도록이라도 리스임차인이 선매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은 종료한다. 이러한 선매권은 자산가치의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금액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는 양도일에 법원이 정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소멸될 수 있다.

제87조 ①법원이 확정한 생생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관리인은 그 양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행한다.

②이러한 행위의 완료까지의 기간동안 관리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양도된 기업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8조 생생계획의 실행에 관한 양수인의 임무는 대금의 완전한 지급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3款 讓受人の義務

제89조 ①대금의 전액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양수인은 재고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취득한 유체자산 또는 무체자산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②양수인이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집행인은 기업위원회 또는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양수인의 처분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수인이 제공한 담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모든 이해관계인은 본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종료일부터 3년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당해 행위가 공고된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④(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53조로 개정) 양수인은 집행인에게 양도 후 각 영업분야별로 행하여진 생생계획상의 처분규정의 적용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집행관 또는 채권자대표의 청구에 의하여 생생계획인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89-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54조로 개정) ①법원은 직권으로 일정기간동안 양도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양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은 국참사원의 명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90조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집행인,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관리인(administrateur ad hoc)을 선임하고 그 직무를 결정할 수 있다.

第4款 債權者에 대한 效果

제91조 법원이 기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생생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채권자는 만기 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2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49-II조로 개정) ①기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에 필요한 행위, 대금의 지급 및 생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의 처분이 있은 후 영업활동의 폐지를 선고한다.

②대금은 집행인에 의하여 채권자들에게 각각의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③채권자들은 생생절차의 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제169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한다.

제9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55조로 개정) ①법원은 특별한 우선적 권리,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그 대금을 배당 및 우선권의 실행을 위하여 각 자산에 할당한다.

②채권자는 대금이 지급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자산에 등기된 권리를 실행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용자를 위한 특별한 부동산 및 동산담보의 부담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담보가 설정된 자산의 소유권 또는 영업임대차의 용익권을 이전받는 날로부터 만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6조제3항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합의되는 지급기간의 유예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양수인과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양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담보권등기의 말소원인이 되는 대금지급이 있 기까지, 채권자는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외에는 채권을 실행 할 수 없다.

第5款 營業의 貸貸借

제94조 법원은 양도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고용관계 및 채권자의 지급을 최선의 조건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청약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명문으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95조 ①집행인은 영업의 임차인에 대하여 그의 직무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인은 영업의 임대차에 관한 모든 장애요인 및 임차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집행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업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개생계획인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③개생계획인가의 취소로 임대인에 대하여 새로운 개생절차가 개시된다. 차임에 의한 배당이 예정되어 있는 채권자들은 그들의 채권 및 담보채권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전액을 회복한다.

제96조 전술한 1956. 3. 20. 법률 제56-277호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영업의 임대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7조 영업의 임대차의 경우 개생계획의 인가의 결정일로부터 2년내에 실제로 기업이 이전되어야 한다.

제98조 ①영업임대차의 임차인이 개생계획에서 정하는 조건과 기간에 관한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측의 지급정지를 증명함이 없이 집행인, 검사 또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개생절차가 개시된다.

②(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41-II조로 개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이전까지 집행인에게 통지한 후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조건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임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조건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第3章 企業의 資產

第1節 債權의 調査 및 確定

제99조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의 경우, 자산처분의 결과의 전액이 절차비용 및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에 흡수되는 때에는 무담보채권의 조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률상·사실상 및 유급·무급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경영자에게 부담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56조로 개정) ①채권자대표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후 인가, 불인가 또는 연기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신고된 채권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목록을 수명법관에게 송부한다.

②채권자대표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작성·제출하는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채권은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101조 ①수명법관은 채권자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여 채권의 확정 또는 거절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한 소송의 계속 또는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②법원은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및 채권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들을 정식으로 소환한 후가 아니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관할권이 없음을 결정하지 못한다.

제102조 ①갱생절차를 개시한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수명법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또는 채권자대표가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이의가 있으나 제5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채권자대표에게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명법관이 채권자대표의 제안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당해 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수명법관이 관할권없음을 선고한 결정의 통지가 있은 후 2월내에 그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103조 ①수명법관이 선고하는 채권의 확정, 거절 또는 관할권없음의 결정은 법

원서기국에 접수된 상태대로 보존된다. 이해관계자는 누구든지 이를 열람하고 국
참사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0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수명법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채권자대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
취하거나 이들을 정식으로 소환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관한 수명법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4조 제102조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내린 결정
은 제10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대로 보존한다. 이해관계자는 법원등기소에
등기된 때로부터 1월내에 당해 결정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5조 주된 채권액의 원본이 절차를 개시한 법원의 최종심급의 소송가액을 초과
·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점에서 정하는 경우 수명법관이 최종적인 선고를 내린다.

제106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35-B조로 폐지)

第2節 일정한 行爲의 取消

제107조 ① 채무자가 지급정지일 이후 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효
이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2. 채무자가 상대방에 비하여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
4. 현금, 상업증권, 대체결제 및 기업체권의 운용의 원활화를 위한 1981. 1. 2.
법률 제81-2호에서 정하는 양도증서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지급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행하여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5. (1991. 7. 9. 법률 제91-650호 제93-I조 및 제97조로 개정) 일사부채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2075-1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실행
된 금액의 기탁 및 공탁
6. 지급정지일 이전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산에 계약상 · 소송상 저당권,
배우자의 법정저당권 및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7. (1991. 7. 9. 법률 제91-650호 제93-II조 및 제97조로 개정) 보전처분행
위. 다만, 그 등록 및 압류가 지급정지일보다 선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또한 법원은 지급정지일 이전 6월동안 제1항 각호의 행위가 무상으로 행해진 경우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8조 지급정지일 이후에 유효하게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와 지급정지일 이후에 행하여진 유상의 행위라도 지급정지의 사실을 알고 채무자와 거래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9조 ①제107조와 제108조의 규정은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또는 채권자대표는 환어음의 소지인, 계산을 위한 발행의 경우 그 위탁자, 수표의 소지인 및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0조 취소의 소송은 관리인, 채권자대표, 청산인 또는 집행인이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채무자의 자산을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第3節 配偶者의 權利

제111조 생생절차가 적용되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각각의 재산은 부부재산제도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제112조 채권자대표 또는 관리인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 채무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당해 자산을 채무자의 자산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3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환취는 그 자산에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다.

제114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VIII조로 개정) 결혼당시 상인, 수공업자, 농업자이거나 결혼후 1년 이내에 상인, 수공업자, 농업자가 된 채무자의 배우자는 생생절차에 있어서 결혼계약 또는 결혼중에 일방배우자가 타방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한 어떠한 계약도 집행할 수 없다. 채권자도 이러한 배우자간의 이익추구행위를 원용할 수 없다.

第4節 動產賣渡人의 權利와 所有權에 기초한 返還請求

제115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5조로 개정) ①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는 생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결정의 공고일로부터 3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절차개시일에 계속적 계약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자산의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계약해제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15-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58조로 개정) 재산의 소유자는 당해 재산에 관한 계약이 공고의 목적이 되는 경우 자신의 소유권을 통지할 의무를 면한다.

제116조 동산의 매도인을 위한 민법 제2102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우선적 권리, 해제권, 취소권 등은 본조이하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117조 ① 매매계약이 갱생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법원의 결정이나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나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청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또한 반환청구는 소유권회복의 소 또는 계약해제의 소가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 이외의 사유로 매도인에 의하여 갱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에 제기되어, 절차개시의 결정 이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가 선고되거나 이를 위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제118조 ① 매매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부된 물품의 인도는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채무자의 계산으로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수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지 아니하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는 화물의 도착전에 화물상환증 등에 의하여 하자없이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제119조 채무자 또는 그의 계산으로 목적물을 수령할 것을 위임받은 제3자에게 운반 또는 발송되지 아니한 매매의 목적물을 매도인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다.

제120조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소유자가 변제를 위하여 또는 특정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맡긴 어음 기타 미지급된 유가증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제121조 ①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매의 목적물은 현물이 존재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보관증서에 의하는지 소유자의 계산으로 매각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②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5조a로 개정) 소유권이전이 가액의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는 절차개시 당시에 현물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영업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소유권유보조건은 인도의 당시에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하 1996. 7. 1. 법률 제96-588호 제19조로 개정) 다른 규정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유보조건은 매수인 및 기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를 제외시키거나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또한 현물의 원상회복은 매수인이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 및 성질을 가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산으로 대체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④위의 어느 경우라도 가액이 즉시 지급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명법관은 신청인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결제기한을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은 절차개시의 결정 이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의 지급으로 행하여진다.

제121-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0조로 개정) 관리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 채권자대표 또는 청산인은 본절이 대상으로 하는 자산의 소유권회복청구 또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승락할 수 있다. 채무자의 동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채권자, 채무자 및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수임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명법관이 그 가부를 결정한다.

제122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1조로 개정) 제121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일 이후 채무자와 매수인간에 행해지는 지급, 유가증권에 의한 결제 또는 상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매매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第4章 雇傭契約에서 발생하는 債權에 대한 辨濟

第1節 債權의 調査

제123조 ①채권자대표는 조사후 노동법 제143-11-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를 정식으로 소환한 후 고용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의 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채권의 명세표는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종업원대표에게 제출되고, 수명법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서기국에 제출되어 국참사원의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된다.

②자신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의 명세표에서 누락된 종업원은 제1항에 정하는 공고가 있은 후 2월내에 노동법원(*conseil de prud'hommes*)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의 자는 종업원대표로 하여금 노동법원에서 자신을 보조하거

나 대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③노동법원에 소환된 채권자대표 또는 채권자대표가 없는 경우 청구인은 노동법 제143-11-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의 구성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소송에 참가한다.

제124조 ①노동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관한 심리는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일에 채권자대표, 관리인 또는 절차에 따라 소환된 이해관계자를 출석시켜 진행한다.

②채권자대표는 갱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경우 10일내에 이를 관할법원 및 당사자인 종업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노동법 제143-1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은 채권자대표 또는 채권자대표가 없는 경우 청구인인 종업원에 의하여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일로부터 10일내에 소송에 참가한다.

제125조 ①노동법 제143-1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의 명세표에 기초한 채권의 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채권자대표에게 거절을 통지하고 채권자대표는 이를 즉시 종업원대표 및 해당종업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해당종업원은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표, 기업주 또는 관리의 임무가 있는 관리인은 그 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종업원은 종업원대표로 하여금 노동법원에서 자신을 보조하거나 대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126조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노동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직접 판결부(bureau de jugement)로 송부된다.

제127조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의 명세표는 수명법관이 승인하고 노동법원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서기국에 보존된다. 이해관계자는 누구든지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 내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節 勤勞者의 優先的 權利

제128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은 갱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의 결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적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

1. 노동법 제143-10조, 제143-11조, 제742-6조 및 제751-11조의 규정에서 그 요건과 액수를 정하고 있는 우선적 권리

2. 민법 제2101조 및 제2104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우선적 권리

제129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① 관리인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모든 채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객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10일내에 수명법관의 명령에 의하여 노동법 제143-10조, 제143-11조, 제742-6조 및 제751-1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우선적 권리를 보장받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은 채권신고 이전에 수명법관의 감독을 받아 처분가능한 자산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가집행의 형태로 최후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된 임금중 1월분을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법 제143조-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은 최초의 수입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第3節 勤勞契約에서 발생한 債權의 支給을 위한 擔保

제130조 내지 제136조 (노동법 제143-9조의 규정 등으로 옮김)

第2編 일정한 企業에 적용되는 簡易節次

제137조 제138조의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는 본편에서 정하는 간이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본법의 다른 규정들은 본편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

제138조 ① 법원은 객생계획의 인가의 결정시까지 직권으로 또는 채무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편에서 정하는 절차가 기업의 객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절차 전부를 적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진행된 관찰기간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본다.

第1章 開始決定과 觀察期間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2조로 개정)

제139조 ① 법원은 객생절차개시의 결정에서 수명법관과 채권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1인의 관리인을 선임한다. 법원은 종업원을 대표하는 기관 또는 종업원을 대표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중에서 선임된 대표로 하여금 기업내부관계에 관하여 종업원을 대표하도록 한다.

②(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17-Ⅱ조로 개정) 노동법 제421-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또는 종업원을 대표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기업에서는 종업원중에서 선임된 대표가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기관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0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3조로 개정) ①관찰기간의 최장기간은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채무자, 검사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참사원이 정하는 명령에 따라 이를 선고한 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농업자의 경우 관계된 특정한 생산물의 경작기간의 종료시까지 관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수명법관은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14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4조로 개정) ①채무자는 관찰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행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관리인은 관리인이든 자격을 갖춘 기타의 관리인이든 불문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관리인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며 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

②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채무자는 제4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즉, 채무자는 수명법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제121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2. 채권자대표는 제28조의 규정에서 관리인에게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임시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는 수명법관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자본의 재구성을 위하여 총회에 제안할 자본증가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142조 (1994. 10. 8. 법률 제94-679호 제31조로 개정) 법원은 기업의 생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영업활동의 계속을 결정하거나 제3편의 규정이 적용되는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第2章 企業의 更生計劃案의 作成

제14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5조로 개정) ①채무자 또는 관리인

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관찰기간동안 기업의 갱생계획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갱생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변제계획을 채권자대표 및 수명법관에게 보고하고 제20조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정보 및 의견의 청취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제144조 ①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매수의 청약은 법원서기국에 제출되고 그 법원서기국은 이를 수명법관, 채무자 및 채권자대표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갱생계획안에 수명법관이 그 승락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모든 청약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5조 ①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기업의 갱생계획안을 법원서기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명법관은 갱생계획안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원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 법원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직권으로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서 정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3章 更生計劃案의 履行

제147조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집행인은 갱생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를 보조한다.

第3編 清算節次

第1章 清算節次開始의 決定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6조로 개정)

第1節 觀察期間없이 開始되는 清算節次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7-II조로 개정)

제148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7-II조로 개정) ①청산절차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있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업으로서 그 영업활동이 정지되거나 갱생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 관찰기간없이 개시된다.

②청산절차는 제3조제2항, 제4조 내지 제7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개시한다.

③지급정지일은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8-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7-II조로 개정) ①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수명법관을 지명하고 청산인의 자격을 가지는 1인의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은 제148-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임된다.

②종업원대표는 각각 경우에 따라 제10조제1항 또는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임된다. 종업원대표는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검사인은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 제1편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한 요건하에 권한을 행사한다.

제148-2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7-II조로 개정) ①청산절차개시의 결정은 제33조제1항 및 제4항,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5조, 제115조, 제115-1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바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채권자는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청산인에게 그 채권을 신고한다.

제148-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7-II조로 개정) ①청산인은 채권의 조사가 행해지는 기간동안 청산활동을 진행한다. 청산인은 채권자대표의 자격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청산인은 제27조, 제48조, 제49조, 제124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 및 채권자대표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한다.

③해고에 관하여는 제148-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2節 觀察期間 중에 開始되는 清算節次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7-III조로 개정)

제148-4조 (구법 제148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7-I조 및 제92-VII조로 개정) ①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법원은 청산인의 자격을 가지는 채권자대표를 선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채권자, 채무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다른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수명법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개임할

수 있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수명법관에 대하여 법원이 이에 관여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③ 청산인은 필요한 경우 채권조사 및 채권순위를 확정하는 심사가 행해지는 기간 동안 청산업무를 집행한다. 청산인은 청산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한다. 이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관리인이든 채권자대표이든 불문한다. 또한 청산인은 채권자대표의 자격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청산인이 해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법 제321-18조 및 제32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3節 通 則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8조,
제149조 내지 제153-4조로 개정)

제149조 기업주의 존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법인인 채무자의 경영자의 존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50조 청산인은 적어도 3월에 한 번씩 수명법관과 검사에게 그 활동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1조 청산인은 그 직무수행중에 수령한 모든 금전을 즉시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이 지체되는 경우 청산인은 공탁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5%의 법정이자를 부담한다.

제152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조로 개정) ①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자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박탈된다. 이 경우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취득한 것이면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였는가를 불문하고 모두 그 자산에 포함된다. 그 자산에 관한 채무자의 재판상·재판외의 권한은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산인이 이를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민사배상의 청원없는 공소제기만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의 형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153조 ①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X조 및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69조, 제92-I조 및 제92-VII조로 개정) 공익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국참사원의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법위내에서 영업활동의 계속을 명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국참사원의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법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농업자의 경우 법원은 관계된 특정한 생산물의 경작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다. 제40조의 규정은 이 기간동안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기업자산의 관리는 제36조의 규정의 예외로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 청산인이 이를 행한다.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청산인은 노동법 제321-8조 및 제32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를 행한다.

③관리인은 영업활동의 계속에 필요한 금액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으로 하여금 수명법관의 감독에 따라 그 금액을 회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3-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0조 및 1994. 10. 8. 법률 제94-679호 제32조로 개정) ①수명법관은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②검사가 보유하는 정보들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명법관에게 제공된다.

제153-2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0조로 개정) ①청산인은 수명법관으로부터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는다. 청산인은 각 경우에 따라 제26조, 제29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 또는 채권자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다.

②관리인은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진행중인 계약을 이행할 권한을 가진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이러한 권한을 가진다.

제153-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0조로 개정) ①청산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제공되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법률상 당연히 해지되지는 아니한다.

②청산인 또는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임대차관계를 계속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③청산인 또는 관리인이 임대차를 계속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은 신청만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는 그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청산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를 확

인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아직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절차개시의 결정후 3월내에 그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의 규정은 영업활동의 계속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한다.

⑤임대인의 우선적 권리는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153-4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0조 및 1996. 7. 1. 법률 제96-588호 제20조로 개정) 제58조 내지 제60조, 제100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은 청산절차에도 이를 적용한다.

第2章 換 價

제154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XI조 및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1조로 개정) ①부동산의 매각은 부동산의 압류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법관은 검사인, 채무자 및 청산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들을 정식절차에 따라 소환한 후 매각의 가격 및 조건을 정하고 공시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②생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 이전에 행하여진 부동산의 압류에 관한 절차가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유보되는 경우, 청산인은 당해 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채권자의 권리내에서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행위는 부동산의 매각을 행한 청산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부동산의 압류에 관한 절차는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이를 유보한 법원에서 속행할 수 있다.

③동일한 요건 하에서, 수명법관은 부동산 기타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양도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명법관이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우호적인 입찰 또는 경매에 의하든 수의계약에 의하여 정한 가격 및 조건에 의하든 매각을 명할 수 있다. 우호적인 입찰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항시 謄貴方式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에 의하여 행하여진 입찰 등으로 인하여 저당권은 해제된다.

⑤청산인은 채권의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한다. 다만, 대심재판소에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농업자의 청산절차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족상황을 고려하여 주된 거주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⑦본조의 적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55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2조로 개정) ①동산 또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생산시설의 집합체는 이를 일괄양도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청산인은 매수의 청약을 유인하고 그 청약기간을 정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청산인에게 이에 관한 청약을 행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법인인 채무자의 법률상·사실상 경영자 또는 이들의 2촌이내의 존속 또는 배우자는 양수인이 될 수 없다.

④모든 청약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제8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청약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될 수 있도록 법원서기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⑤수명법관은 채무자,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 검사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들을 정식으로 소환한 후, 가장 성실하다고 판단되고 고용 및 채무변제의 지속적인 보장에 관하여 최선의 조건을 제공하는 청약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청산인은 양도행위의 이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양도대금은 배당 및 우선적 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각각의 양도된 자산에 할당된다.

제156조 ①수명법관은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절차에 따라 소환하고 검사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찰·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기타 자산의 매각을 명한다.

②수명법관은 그가 정한 요건들이 준수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7조 청산인은 모든 매각을 행하기 전에 또는 채무자의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파회전에 이를 관할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행정관청은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8조 ①청산인은 수명법관의 감독 및 채무자의 의견의 청취과정을 거쳐 집단적으로 채권자들과 관련된 부동산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중재하거나 화해를 진행할 수 있다.

②중재 또는 화해의 목적물이 불확정적인 가치를 갖거나 법원의 관할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중재 또는 화해는 당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9조 ①수명법관의 지시를 받는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채무자에 의하여 담보에 제공된 재산 또는 압류된 물건을 유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일로부터 6월내에 수명법관에 대하여 그 실행을 명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그 실행의 15일전에 채권자에게 당해 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질권자인 채권자는 아직 그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실행전에 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이 전액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 질권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당해 자산 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중 확정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④청산인에 의한 매각의 경우,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그 대금에 미친다. 담보의 보존을 위하여 행하여진 등기는 청산인의 주도하에 말소된다.

第3章 債權의 調査

第1節 債權의 辨濟

제160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Ⅱ조로 개정) ①청산절차개시가 결정되는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이러한 채권이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통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은 결정일의 환율에 의하여 그 곳의 통화로 환산한다.

第1款 個別的인 追及權

제16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3조로 개정) ①청산인이 청산절차의 결정일로부터 3월내에 담보자산의 환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우선적 권리, 질권 또는 저당권있는 채권자와 우선적 권리를 가진 국고는 이들의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채권을 신고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부동산매각의 경우 제15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압류의 절차가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전에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별적인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당해 결정 이전에 효력이 생긴 행위 및 절차를 면제받는다.

제161-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4조로 개정) ①수명법관은 직권

으로 또는 채권자대표, 청산인, 집행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지급에 우선하여, 그 수령인은 금융기관이 행하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第2款 配 嘉

제162조 ① 하나 또는 수개의 금액의 배당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보다 선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자와 승인받은 저당권자가 그들의 총채권의 비율로 배당에 참가한다.

② 부동산이 매각되고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자와 저당권이 있는 채권자간의 순위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중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그 채권의 전액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수령한 금액만큼을 공제한 후 배당을 수령한다.

③ 제2항에서 공제된 금액은 무담보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제163조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에 부분적으로만 참가한 저당권있는 채권자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순위결정 이후에 잔존하는 금액에 의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전의 배당에서 수령한 금액이 배당순위결정 이후에 계산된 배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초과분은 그 지급이 유보되어 있는 무담보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에 산입된다.

제164조 우선적 권리 또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부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자는 그 잔액에 대하여 무담보채권자와 함께 배당에 참가한다.

제165조 제159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62조 내지 제164조의 규정은 특정한 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도 적용된다.

제166조 ① 적극재산의 가액, 청산절차의 비용, 기업주나 경영자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제공된 보조금 및 우선적 권리가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확정된 채권액에 비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할당된다.

② 종국판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할 채권으로서 승인에 의하여 채권에 해당하게 된 부분, 특히 회사의 경영자의 보수는 별도로 유보된다.

第2節 清算節次의 終決

제167조 법원은 다음의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채

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를 정식으로 소환하고 수명법관의 보고에 의하여 청산절차의 종결을 선고할 수 있다.

1. 집행가능한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산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충분한 금액을 확보한 경우
2. 적극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산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68조 청산인은 집행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계산서작성일로부터 5년동안 청산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그가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9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5조로 개정) ①적극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산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회복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채권은 예외로 한다.

1. 당해 채권이 형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관련행위가 채무자의 직업상의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것이었는지의 여부 및 조세포탈행위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2. 당해 채권이 채권자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보증인 또는 공동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채권자에 대한 사기, 간생절차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재재의 부과, 상사기업 또는 법인의 경영 또는 감독에 대한 방해, 고의적인 파산 또는 채무자나 채무자가 경영하는 법인이 지급정지상태의 선고를 받거나 적극재산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절차가 종결된 경우 등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개별적인 추급권을 회복한다.

④채권이 확정되고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한 채권자는 법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소제기를 위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다.

제170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6조로 개정) 적극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되는 경우 적극재산이 실현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청산절차는 모든 이해관계 있는 모든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유를 불인 법원의 결정으로 속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절차진행비용이 공탁소(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에 공탁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공탁된 비용은 절차의 속행으로 회수된다.

금액에 관한 우선적 권리에 의하여 이를 출자한 채권자에게 상환된다.

第4編 抗 告

제171조 ①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결정은 항소 또는 파기신청의 대상이 된다.

1. 절차개시의 결정. 이 경우 청구권자는 채무자, 채권자 및 검사이다(주된 당사자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2. 기업계속계획을 인가하거나 불인가하고 청산절차개시를 선고하는 결정. 이 경우 청구권자는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대표, 기업위원회 또는 종업원대표 및 검사이다(주된 당사자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3. 기업계속계획을 수정하는 결정. 이 경우 청구권자는 채무자, 집행인, 기업위원회 또는 종업원대표 및 검사이다(주된 당사자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 ②(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33조로 개정) 검사의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유보한다.

제171-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8조로 개정) 절차의 개시를 선고하는 결정은 제3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제172조 기업계속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은 제3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제173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제3자 이의신청, 항고 또는 파기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수명법관의 선임 또는 개임에 관한 결정
2. 수명법관이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한 명령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단, 소유권에 기초한 원상회복을 선고하는 결정은 예외로 한다.

제173-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79조로 개정) 제154조,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수명법관의 명령에 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검사에 의한 항고 또는 파기신청에 의해서만 다투어질 수 있다.

제174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80-I조 및 제80-III조로 개정) ①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결정은 검사에 의한 항고 또는 파기신청에 의해서만 다투어질 수 있다.

1. 관리인, 채권자대표, 청산인, 검사인 및 감정인의 선임 또는 개임에 관한 결정
2. 유예기간을 선고하는 결정, 기업의 계속 또는 양도를 선고하는 결정 또는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영업의 임대차를 명하는 결정

②기업양도계획을 인가 또는 불인가하는 결정은 검사, 제8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양수인 또는 당사자에 의한 항고 또는 파기신청에 의해서만 다투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당해 결정으로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갱생계획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부담이 강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또한 제8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사자는 당해 계약의 양도에 관한 결정의 당사자로서만 항고할 수 있다.

③기업양도계획을 수정하는 결정은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검사 또는 양수인이 제기한 항고 또는 파기신청에 의해서만 다투어질 수 있다.

④(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80-I조로 개정) 검사에 의한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유보한다.

제175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81조로 개정) ①제1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으로 행하여진 결정에 대하여는 제3자 이의신청 또는 파기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제174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으로 행하여진 결정에 대한 파기신청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76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검사는 갱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통지 및 회사의 경영자의 책임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한 파기신청은 검사만이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7조 ①사건의 이송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새로운 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의 최장기는 본법 제2편에서 정하는 간이 절차의 적용에 의하여 1월이 단축된 3월로 한다.

②청산절차를 선고하거나 기업계속계획 또는 기업양도계획을 인가 또는 불인가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의 경우 가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관찰기간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

第5編 法人 및 그 經營者에 관한 特別規定

제178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II조로 개정) 법인의 갱생절차 또는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은 그 법인의 기관 또는 사원으로서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법원은 이들에 대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갱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개시한다.

제179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82조 및 제92-IV조로 개정) 갱생절

차가 사법인에 대하여 개시된 경우, 본편에 의한 규정은 자연인인 경영자 및 법인인 경영자의 상임대표(représentant permanent)인 자연인에게도 적용한다.

제180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83조로 개정) ① 법인의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의 부족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이러한 재산부족의 원인이 부실경영에 있는 때에는 법률상·사실상 및 유상·무상의 경영자 전원 또는 일부에게 법인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또는 연대없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제소권은 간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를 선고하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③ 제1항의 적용으로 경영자가 지급한 금액은 채무자의 자산에 산입되어 기업이 계속되는 경우 채무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된다.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의 경우에는 이 금액은 비례적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제181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법원은 법인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의 책임이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영자에 대하여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182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① 법인의 간생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상·사실상 및 유상·무상의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경영자에 대하여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1. 경영자가 법인의 자산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한 경우
2. 법인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한 경우
3. 법인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또는 당해 경영자가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이나 기업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산 또는 신용을 이용한 경우
4.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적자경영을 부당하게 계속한 경우
5. 법인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인의 계산서류를 인멸한 경우 또는 법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법인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령 또는 은닉하거나 법인의 채무를 부당하게 증가시킨 경우
7.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84조로 개정) 법규정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완전하거나 부정한 회계장부를 작성한 경우

②본조의 적용으로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채무에는 개인적인 채무 이외에 법인의 채무도 포함된다.

③지급정지일은 법인의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한다.

④제소권은 간생계획의 인가의 결정일 또는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일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제183조 제180조 내지 제182조에서 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 채권자대표, 집행인, 청산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건을 담당한다.

제184조 제180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제183조에서 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인 경영자 및 제17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법인경영자의 상임대표인 자연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공공기관, 공공단체, 사회보장기관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모든 자료 또는 정보의 통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수명법관 또는 수명법관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지위를 부여한 재판부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第6編 個人的 制裁 기타 能力制限

제185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간생절차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본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XII조로 개정) 상인, 수공업자, 농업자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연인
2.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률상·사실상의 경영자인 자연인
3. 제2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자인 법인의 상임대표인 자연인

제186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XIII조로 개정) ①개인적인 재(faillite personnelle)는 모든 상업기업, 수공업기업, 농업기업 기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을 직접·간접으로 지휘·경영·관리 또는 감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개인적인 제재는 1968. 1. 1. 개정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당해 금지 또는 실권이 적용된다.

제187조 법원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실 중 하나를 증명하여 상인, 농업자 또는 수공업자인 자연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제재를 선고 할 수 있다.

1. 지급정지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적자경영을 부당하게 계속한 경우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의 작성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멸한 경우
3.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령 또는 은닉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채무를 증가 시킨 경우

제188조 법원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법률상·사실상 및 무상·유상 여부를 불문하고 제18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활동 중 하나를 행한 법인의 경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제재를 선고할 수 있다.

제189조 법원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제재를 선고할 수 있다.

1.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XV조로 개정) 법이 정하는 금지에 위반하여 상행위, 수공업, 농업 또는 법인의 지휘 또는 경영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갭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를 회피 또는 지연시킬 목적으로 시가미만의 전매를 위한 매수를 행하거나 자산을 얻기 위하여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3. 기업 또는 법인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를 제3자를 위하여 대가없이 부담하는 경우
4. 지급정지 이후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무의 변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 15일의 기간 내에 지급정지의 상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90조 법원은 책임을 부담하게 된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제재를 선고할 수 있다.

제191조 제187조 내지 제19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 채권자대표, 청산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담당한다.

제192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29-XVI조로 개정) ①제187조 내지 제19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적인 제재 대신에 모든 상

업기업, 수공업기업, 농업기업 및 하나 또는 수개의 법인을 지휘, 경영, 관리 또는 감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86조로 개정) 또한 제1항에서 정하는 금지는 제185조에 정하는 자로서 악의로 채권자대표에게 절차개시의 결정일로부터 1주내에 채권을 보충 또는 증명하는 증서나 채무금액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선고될 수 있다.

제19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①개인적인 제재의 선고를 받거나 제19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를 선고받은 경영자의 의결권은 발생절차 또는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총회에서 당해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인이 선임한 수임인이 이를 행사한다. 이러한 수임인의 선임은 관리인, 청산인 또는 집행인의 청구에 의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영자 전원 또는 그들 중 일부에 대하여 의결권 또는 법인의 지분을 양도할 것을 명하거나 법인이 선임한 수임인의 처분에 의하여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받아 이를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각대금은 당해 채무가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게 된 경우 회사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데 충당한다. 제194조 개인적인 제재 또는 제19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를 선고하는 결정은 선거직공무원에의 취임금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의 제한은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연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이러한 능력제한은 관할행정관청이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한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제195조 ①법원이 개인적인 제재 또는 제19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 법원은 당해 결정의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 실권, 권리행사금지 및 선거직공무원에의 취임금지는 정해진 기간의 경과로 법원의 별도의 결정없이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②청산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인한 선거직공무원에의 취임금지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채무의 소멸을 위한 종결의 결정은 기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자의 모든 권리를 복권시킨다. 즉, 이러한 결정으로 그들에게 선고된 모든 실권, 권리행사금지 및 선거직공무원에의 취임금지는 면제 또는 해제된다.

④이해관계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금액을 제공한 후 법원

에 대하여 실권, 권리행사금지 및 선거직공무원에의 취임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실권, 권리행사금지 및 선거직공무원에의 취임금지의 전부에 대한 해제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복권을 포함한다.

第7編 破産犯罪 기타 犯罪

第1章 破産犯罪

제196조 본장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XVII조로 개정) 상인, 수공업자, 및 농업자
2.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私法人의 모든 임원 또는 청산인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법인의 경영자인 법인의 상임대표인 자연인

제197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XVIII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①생생절차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19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산범죄가 성립한다.

1. 생생절차를 회피 또는 지연시킬 의도로 시가미만의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를 행하거나 자산을 얻기 위하여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령 또는 은닉한 경우
3. 부당하게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4. 기업 또는 법인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계산서류를 인멸한 경우 또는 법이 의무로 정하고 있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 명백하게 불완전하고 부정한 회계장부를 작성한 경우

제198조 (1992. 12. 16. 법률 제92-1336호 제264조 및 제373조로 개정) ①과산범죄에 대하여는 5년의 징역 및 5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산범죄의 공범도 같다. 이 경우 공범이 상인, 농업자 또는 수공업자가 아니거나 경제활동의 영위하는 私法人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경영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제199조 (1992. 12. 16. 법률 제92-1336호 제264조 및 제373조로 개정) 파산 범죄의 주범 또는 공범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7년의 징역 및 7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제200조 (1992. 12. 16. 법률 제92-1336호 제264조 및 제373조로 개정) 제198조 및 제19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형벌이 과해지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형벌을 병과한다.

1. 형법 제131-26조에 따른 공민권, 민사권 및 가족권의 행사금지
2. 5년이하의 기간동안 공직취임금지 및 파산범죄를 행한 영업활동분야에서의 직업적 영업활동 또는 회사에 의한 영업활동의 금지
3. 5년이하의 기간동안 공공계약에의 참가금지
4. 5년이하의 기간동안 수표의 발행금지. 다만, 발행인의 지급인에 대한 수표자금지급의 유보가 허용되는 수표 또는 보증수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선고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는 형법 제131-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한다.

제201조 ①제19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파산범죄를 범한 자를 심리하는 형사재판부는 그 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재재 또는 제19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형사재판부 및 민사·상사재판부가 종국결정에 의하여 같은 자에 대하여 각각 개인적인 재재 또는 제19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를 선고한 경우에는 형사재판부의 선고만 집행한다.

제202조 (1992. 12. 16. 법률 제92-1336호 제265조 및 제373조로 개정) ①법인은 형법 제12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198조 및 제19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법인에게 과하는 형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제131-3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벌금
2. 형법 제131-39조에 규정에서 정하는 처벌

③형법 제131-39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재재는 범죄가 행하여진 당해 영업활동의 행위 또는 당해 영업활동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2章 기타 犯罪

제203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XIX조 및 XX조로 개정)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는 3월이상 2년이하의 징역과 10,000프랑이상 200,000프랑이하의 벌금 또는 이들 중 하나의 형에 처한다.

1. 상인, 수공업자, 농업자 또는 법인의 경영자(사실상·법률상 및 유상·무상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유예기간동안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하거나 절차개시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자
2. 상인, 수공업자, 농업자 또는 법인의 경영자(사실상·법률상 및 유상·무상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기업계속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의 변제방법을 위반하여 변제를 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한 자
3. 유예기간 또는 기업계속계획의 집행기간 동안 채무자가 처한 상황을 알면서 채무자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부당한 지급을 수령한 자

제204조 (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XXI조 및 1992. 12. 16. 법률 제92-1336호 제266조 및 제373조로 개정)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는 제198조 내지 제20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형에 처한다.

1. 제19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동산, 부동산 기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취 또는 은닉하는 자. 이 경우 형법 제121-7조의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갭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에서 자기의 명의로 또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채권을 신고한 자
3. 타인의 명의 또는 가공의 명의로 상행위, 수공업행위, 농업행위를 영위하는 자로서 제20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행위 중 하나의 범죄를 행한 자

제205조 (1992. 12. 16. 법률 제92-1336호 제266조 및 제373조로 개정) 제19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의 배우자, 비속, 존속, 방계친족 또는 인척으로서 갭생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의 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을 횡령, 유용 또는 은닉한 자는 형법 제341-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형에 처한다.

제206조 제203조 내지 제20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당하게 사취되었던 모든 동산, 부동산 또는 권리를 직권으로 채무자의 자산에 회복시키는 선고
2. 청구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선고

제207조 (1985. 12. 30. 법률 제85-1407호 제85조 및 제94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88조로 개정) ①관리인, 채권자대표, 청산인 또는 집행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 제31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형에 처한다.

1. 고의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자신의 직무수행중에 수령한 금액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이든 부당한 것임을 알고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이든 불문한다.
2.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이익에 반함을 알면서 자신의 처분권한을 이용하는 행위

②관리인, 채권자대표, 청산인, 집행인 또는 절차에 어떠한 자격으로든 참여한 기타의 자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다만, 검사인 및 종업원대표는 예외로 한다. 수소법원은 이러한 취득에 대하여 무효를 선고하고 청구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명한다.

제208조 (1992. 12. 16. 법률 제92-1336호 제266조 및 제37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①생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의 결정 이후 채무자의 부담이 되는 특별한 이익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형법 제314-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형에 처한다.

②수소법원은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무효를 선고한다.

제209조 (1992. 12. 16. 법률 제92-1336호 제266조 및 제37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제19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로서 생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의 대상이 된 법인의 소송에 있어서 또는 법인의 사원총회 또는 채권자집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악의로 횡령 또는 은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거나 부담하지도 아니한 채무를 부당하게 확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198조 내지 제20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형에 처한다.

第3章 節次規定

제210조 본편의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죄행위가 생생절차개시의 결정일 이전에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는 생생절차개시의 결정일로부터 진행한다.

제211조 형사재판부는 검찰의 소추에 의하거나 관리인, 채권자대표, 종업원대표,

집행인 또는 청산인 등의 형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하여 소송을 담당한다.

제212조 검사는 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이들이 보유하는 모든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3조 ①관리인, 채권자대표, 종업원대표, 집행인 또는 청산인이 제기한 소송의 비용은 무죄판결의 경우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유죄판결의 경우 국고는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14조 본편에 의한 유죄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이는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공고 한다.

第8編 雜 則

제215A조 (1987. 7. 16. 법률 제87-550호 제20조로 개정) 수명법관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그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 ①채무자의 처분가능한 자산으로부터 수명법관에게 지급될 수당을 즉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수명법관의 결정 또는 법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이를 선지급 또는 체당한다. 이러한 선지급 등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에 부수되는 통지비용 및 공고비용이 포함된다.

1. 갑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진행중에 채권자 전체 또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결정
 2. 채무자의 자산의 보전 또는 회복을 위한 소송 또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의 실행
 3. 제187조 내지 제19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송의 실행
- ②또한 법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갑생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수정에 관한 소송의 실행에 부수하는 통지비용 및 공고비용은 이를 국고에서 선지급 또는 체당한다.
- ③본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모든 결정에 대한 항고심 및 파기절차에 적용한다.
- ④이러한 선지급 등의 상환과 관련하여 국고는 소송비용의 우선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216조 본법 제186조, 제192조 및 제19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 실효 또는

능력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직업적인 영업활동을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6월 이상 2년이하의 징역 및 10,000프랑이상 2,500,000프랑이하의 벌금 또는 이들 중 하나의 형에 처한다.

제217조 (민법 제1188조로 옮겨 규정)

제218조 민법 제1844-7조제7호의 규정은 이를 삭제하고 동조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219조 (형사소송법 제768조제5호, 제775조제7호 및 제776조제2호)

제220조 (선거법 제5조제5호 및 제202조)

제221조 보험법 제113-6조, 제132-14조, 제132-17조, 제326-1조, 제326-6조, 제326-11조, 제328-5조 및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222조 내지 제225조 (노동법 제321-7조제2항, 제321-10조, 제321-11조제5항 및 제432-1조)

제226조 본법의 적용을 위하여 기업위원회 또는 종업원대표는 그들 중에서 그들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를 지명한다.

제227조 (노동법 제412-18조, 435-1조 및 436-1조)

제228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IV조로 개정) ①관리인, 고용주 또는 청산인에 의하여 계획되는 제10조, 제139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종업원 대표의 해고는 의무적으로 기업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당해 기업 위원회는 해고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해고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l'inspecteur du travail*)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실행할 수 없다. 사업장내에 기업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건을 담당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고용주 또는 청산인은 경우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즉시해고할 수 있다. 해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고는 취소되고 그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상실된다.

④노동법 제143-1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채권자대표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동법 제143-11-7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으로 채권자대표에 의하여 종업원들에게 전가되는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종업원대표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보호조치는 종료한다.

⑤종업원대표가 제139조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생생절차에서 정하는 마지막 청문 및 감정의 기간의 종결로 보호조치는 종료한다.

제229조 (1953. 9. 30일자 명령 제53-960호 제1조)

제230조 (1966. 7. 24. 법률 제66-537호 제22조, 제33조, 제54조, 제67조의2, 제68조, 제114조, 제150조, 제248조, 제249조, 제331조 내지 제337조 및 제473조)

제231조 (1983. 1. 3. 법률 제83-1호 제30조)

제232조 (1957. 3. 11. 법률 제57-298호 제61조로 옮겨 규정)

제233조 (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92-VI조로 개정) ①모든 법문의 규정 중 '자산의 청산' 또는 '소송상 결제 또는 자산의 청산'이라는 용어는 '생생절차 또는 청산절차'로 변경한다.

②채무변제의 집단절차에 관한 구규정에 적용되던 다른 법상의 기준을 본법의 규정에 적용하는 것과 법개정으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없어진 기준을 폐지하는 것에 관하여는 국참사원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234조 프랑스상법의 라인북부, 라인남부 및 모젤지방에의 적용에 관한 1924. 6. 1. 법률의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본법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234-I조 (1990. 12. 31. 법률 제90-1259호 제12조로 개정) 라인북부, 라인남부 및 모젤지방에서의 특정부동산 매각에 관한 1975. 12. 27. 법률 제75-1256호 제1조의 규정은 1986. 1. 1. 이후에 개시되는 생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자산에 포함된 부동산의 강제매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5-I조 (1984. 3. 1. 법률 제84-148호 제58조)

제235-II조 (노동법 제434-6조)

제236-I조, 제236-II조 (1966. 7. 24. 법률 제66-537호 제17-3조 및 제66조)

제236-III조 내지 제236-VI조 (1984. 3. 1. 법률 제84-148호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

제236-VII조 (1966. 12. 30. 법률 제66-537호 제430조)

제237조 ①상사회사법의 1976. 12. 13. 유럽공동체의회가 채택한 제2지침에의 조화를 위한 1981. 12. 30. 법률 제81-1162호 제33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1985. 1. 1. 현재 절차의 임시정지상태에 있거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주식회사는 그 자본이 각각 경우에 따라 250,000프랑 또는 1,500,000프랑에 달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해산되지는 아니한다. 이는 1984. 6. 1.부터 1985. 1. 1. 사이에 채무변제계획을 포함하는 경영 및 재정에 관한 생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 또는 강제화의를 인가하는 결정이 행하여진 회사에 대하여도

같다.

②제1항의 회사들은 채무변제계획을 포함하는 경영 및 재정에 관한 개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 또는 강제화의를 인가하는 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만큼 그 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들 회사는 당해 기간의 경과로 법률상 당연히 해산된다.

③본조의 규정은 1985. 1. 1. 부터 시행한다.

제238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규정들은 이를 폐지한다.

1. 파산 및 파산범죄와 관련한 회사의 경영자·관리인의 경영권·관리권의 제한 및 실권에 관한 1935. 10. 8. 명령 제10조 내지 제19조
2. 소송상 결제·자산의 청산·개인파산 및 파산범죄에 관한 1967. 7. 13. 법률 제67-536호 제149조, 제160조 내지 제164조
3. 일정한 기업의 경영상·재정상의 개생촉진을 위한 1967. 9. 23. 명령 제67-820호

제239조 ①노동법 제143-11-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험은 본법의 시행후 2년동안 최초의 관찰기간의 종료시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를 한도로 하여 동조제2항에 서 정하는 유급휴가의 보상을 담보한다.

②제1항의 기간동안 노동법 제143-11-1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최고금액은 1월의 근로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제한한다.

제240조 ①본법의 규정은 그 시행후에 개시된 절차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7. 7. 13. 법률 제67-563호에 의한 개생절차가 본법의 시행후 자산의 청산으로 전환되는 경우, 법원은 전체로서의 양도가 고려된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하나의 결정으로 기업의 자산의 양도에 관한 본법의 규정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2조제3항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당해 법원에 양도계획을 제출하고 임시적으로 경영을 담당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리인을 선임한다. 관리인은 채권자대표에게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양도계획이 불인가되는 경우에는 본법 제3편의 규정이 당해 절차에 적용된다. 다만, 제169조 및 제170조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③진행중인 소송상 결제의 절차 또는 자산청산의 절차에 있어서 본법의 시행후 관리인이 수령한 모든 금액은 즉시 공탁소의 계정 또는 청산중인 기업의 은행계정 또는 우편계정에 이체된다. 이체를 해태하는 경우 관리인은 이체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5%의 이자를 부담한다.

④제195조제4항의 규정은 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1967. 7. 13. 법률 제67-563호 제105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선고된 개인파산 및 기타의 제재에 적용한다.

⑤(1994. 6. 10. 법률 제94-475호 제89조로 개정) 갱생절차, 자산의 청산, 개인적인 제재 및 파산범죄에 관한 1967. 7. 13. 법률 제67-563호의 적용으로 선고된 청산절차개시의 결정은 범죄기록에서 삭제된다. 또한 채무의 소멸을 위한 종결의 결정 및 동법의 적용으로 선고된 자산의 청산을 선고하는 결정도 당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의 경과로 범죄기록에서 삭제된다.

제241조 ①상사법원에 소속되어 법관으로 복무하다가 1984년에 해임된 법원장 및 법관은 1985. 1. 1.부터 1년간 그 직을 유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사법원의 법원장 및 법관은 그들이 소속되는 법원의 정원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42조 ①본법은 프랑스의 해외영토 및 마이요뜨(Mayotte)영토에도 적용한다. 단, 제130조 내지 제13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988. 12. 30. 법률 제88-1202호 제29-XXII조로 개정) 프랑스의 해외영토에서 제2조, 제22조, 제24조, 제70조, 제72조, 제103조 및 제123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조치는 관할권있는 해당영토의회의 위원회가 정한다.

제243조 본법의 규정은 1986. 1. 1. 이후 명령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 제235조제2항, 제237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연구보고 98-4

프랑스의 倒産法

1998년 12월 26일 印刷

1998년 12월 31일 發行

發行人 徐 承 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亞 商 社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화:(02)579-0090, FAX(02)579-2381

등록번호 : 1981.8.11. 제1-a0190호

값 6,5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82-7 93360

